

ISSN : 2635-6104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 14 / 2018 Autumn



북극학회
Arctic Academy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14. 2018 Autumn

2018년 10월 31일 발행

역은이 : 북극학회

전화 042) 520-5364

FAX 070-4850-8428

주소 : (35345) 대전광역시 서구 연자1길14 배재대학교 21세기관 448호

펴낸곳 : 오크나

주소 : (34862)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64-2

전화 : 010-5755-0086

본 연구는 2014년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NRF-2014 B0153)하에 시작,
2016년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NRF-2016 B0131)에 의해 지속되고 있음

디 자 인 : 이다용

표지사진 : 2017년 캄차트카 여름전경(예병환, 배규성 공동연구원 현지출장 중 촬영)

연 구:

러시아와 미국의 베링 해 해양국경선과 러시아와 일본의 오호츠크 해 쿠릴 4개 섬 영유권 현황과 이슈 (한종만)	1
시베리아 민족들의 결혼 문화 (계용택)	16
러시아 북극권 도시연구: 우랄 북극권의 보르쿠타를 중심으로 (박종관)	24
러시아의 북극권 에너지자원개발과 한·러 협력방안 (예병환)	32
네네츠 민중봉기 '만달라다' (김정훈)	43

자 료:

2018.03.22 – 2018.07.10. 북극권 관련 뉴스 (계용택)	51
--	----

러시아와 미국의 베링 해 해양국경선과 러시아와 일본의 오토츠크 해 쿠릴 4개 섬 영유권 현황과 이슈

한종만(배재대학교 러시아·중앙아시아학과 교수)

I. 러시아와 미국의 베링 해 해양국경선 현황과 이슈¹⁾

1. 개요

연안 해역에 대한 국가 주권과 냉전 종식을 정의하는 데 있어 해양법의 보편적 실행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러 인접국과 해양 경계 분쟁에 대한 지속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갈등은 미국, 노르웨이, 일본과 국경 문제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이슈는 군사적 대결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양지역에 대한 정치적 분쟁이 존재한다고 4개국은 주장하고 있다. 중요한 이슈는 전략적 고려 사항, 풍부한 수산자원, 해양 바닥에 존재하는 대규모 석유/가스전 매장지와 관련되어 있다. 이 글은 미국과 러시아 해양경계선 갈등의 역사, 양측의 견해, 그리고 이 분쟁이 이 지역의 해양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역사적 관점

1867년에 미국은 60만 평방마일 상당의 알래스카 영토를 러시아로부터 구입했다. 구입 가격은 720만 달러 혹은 1에이커 당 2센트였다. 이 매매계약 협정으로 러시아로부터 새롭게 획득한 미국의 알래스카를 통해 해양국경선이 확정됐다. 이 국경선은 1990년 미국 베이커 국무장관과 소련 외무성 장관 세바르나제가 서명한 국경조약을 통해 재확인됐다.

소련방의 해체 이후 러시아 정부는 에두아르트 세바르나제(Eduard Shevardnadze)가 러시아 이익을 효율적으로 대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협정을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러시아정부는 이 협정의 비준을 거부하면서 이 협정을 수정하기 위해 미국과의 새로운 협상을 원하고 있다. 러시아 조약 수정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경해역에서의 러시아 선박, 특히 알래스카 대구류의 수산 쿼터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최종적으로 러시아의 요구를 거절했다. 국제법은 미국의 입장을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양국 간 해양 국경선을 정의하는 최종적 협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0년 협정은 비준되지 않았으며 또한 기타 합의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해양국경선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이 글은 다음의 글을 번역해서 요약했음. Vlad M. Kaczynski, "US-Russian Bering Sea Marine Border Dispute: Conflict over Strategic," *Russian Analytical Digest*, No.20, May 1, 2017, pp. 1-5.

3. 베링 해 해양국경선에 관한 러시아와 미국의 논쟁

미국이 러시아정부로부터 알래스카 매입 당시 양국은 해안선 부근으로 제한된 해양요구를 상호 인정했다. 그러나 1867년 매매조약에서는 베링 해를 통해 양국 간 국경을 정의했다. UN 해양법 원칙들이 세계 대양을 관리하는 체제로 진전되면서 1867년 매매조약에서 포함된 해양 경계선은 세계에서 이론의 여지가 가장 높은 해양국경선으로 변모했다. 유감스럽게도 러시아와 미국이 체결한 매매 협정의 내용에서 해양경계선의 형태는 표현되지 않았으며, 지도 투상도법(投像圖法)과 수평적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이 해양경계선을 묘사하는 것으로 사용됐다. 게다가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도 양국은 원본이나 혹은 확증된 지도를 만들지 않았다. 양국 간 해양경계선 정의 대한 차이점은 지속적인 갈등을 잉태했다.

해양 국경선을 표시하기 위해 지도제작자들은 보통 2가지 형태의 경계선을 사용하고 있다. 2가지 경계선은 항정선(rhomb lines)과 지구의 대권(大圈)으로 알려진 측지선(geodetic lines)이며, 지도 제작을 위해 메르카토르(Mercator 1512-1594년) 투영도법과 원뿔형 제도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1> 항정선과 메르카토르 투영도법에 의거한 측지선을 베링 해 해양국경선의 차이점 묘사



자료: Vlad M. Kaczynski, "US-Russian Bering Sea Marine Border Dispute: Conflict over Strategic," *Russian Analytical Digest*, No.20, May 1, 2017, p. 2

이 경계선의 형태와 지도제작에 따라 경계선들은 직선 혹은 곡선으로 표시된다. 예를 들면 항정선은 메르카토르 투영도법에 의거해서 직선으로 표시되는 반면에 측지선은 곡선으로 표시된다. 1867년 매매조약에서 양국은 해양경계선을 직선으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은 베링 해 해양 경계선을 메르카토르 투영도법에 의거한 항정선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원뿔 제작법에 의거한 측지선으로 해석했다.

미국과 소련은 각각 지도제작에서 직선으로 해양경계선을 표시하고 있지만 각국은 그들 자신의 통제 하에서 해양과 해저면의 규모를 극대화를 요구해왔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는 해양지역에서 해양경계선의 다른 해석으로 해양경계선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1977년 미국과 소련이 UN 해양법에 의거해서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실행할 당시 양국은 '1867년 설정된 경계선의 존중'의 의향을 나타내는 외교 각서를 교환했다. 이 각서에서 양국은 200해리 해양경계선에 중복되는 각국의 어업관할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 후 1867년 매매조약에 관한 해양경계선에 관한 미국과 소련의 상이한 해석이 명백하게 들어났다. 해양 지역의 분쟁 해역규모는 약 1만 5,000평방해리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소련은 내부적 조치로서 1867년 매매조약에 관한 각각의 다른 해석을 지속적으로 존중하는데 합의했으며, 1980년 초부터 해양경계선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협상은 시작됐다. 소비에트 협상당사자들은 '직선 경계선에 대한 주장'을 위한 소련 정치국의 특별 지시사항을 대변해왔다.

소련이 제안한 베링해협 북쪽 해상영토 부분에 대한 미국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소련의 협상자들이 베링 해 해상지역을 미국에 양도한 것으로 일부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소간의 해양국경 협상 과정이 10년이 경과된 1990년에 양국은 새로운 협정에 도달하게 된다. 1990년 협정은 미국이 요구하는 측지선과 소련이 요구하는 메르카토르 투영도법으로서 항전선 간 차이점으로 분리됐다. 그 결과 몇 개의 '특별 해양지역'이 설정됐다.²⁾

4. 해양자원

1990년 미소간의 협정은 대륙붕 석유와 가스 광구권의 판매를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의 전략적 및 자원 이해관계 차원에서 매우 양호한 결과로 이어지면서 미국 의회는 빠르게 이 협정을 비준했다. 미국 광물관리청(US Minerals Management Service)은 베링 해와 축치(혹은 척치 해) 해 지역에서 석유와 가스 매장량 잠재력은 240조 배럴 상당의 석유와 126조 입방미터 상당의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했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 어류 채취량은 미국과 러시아의 수산업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미국은 매년 베링 해에서 200만 톤 상당의 수산물을 포획하고 있다. 수산자원의 진입권과 획득권리와 관련된 논쟁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1990년 이 협정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1990년 해양국경선 협정에서 미국은 빠르게 비준한 반면에 붕괴 전이었던 소련은 이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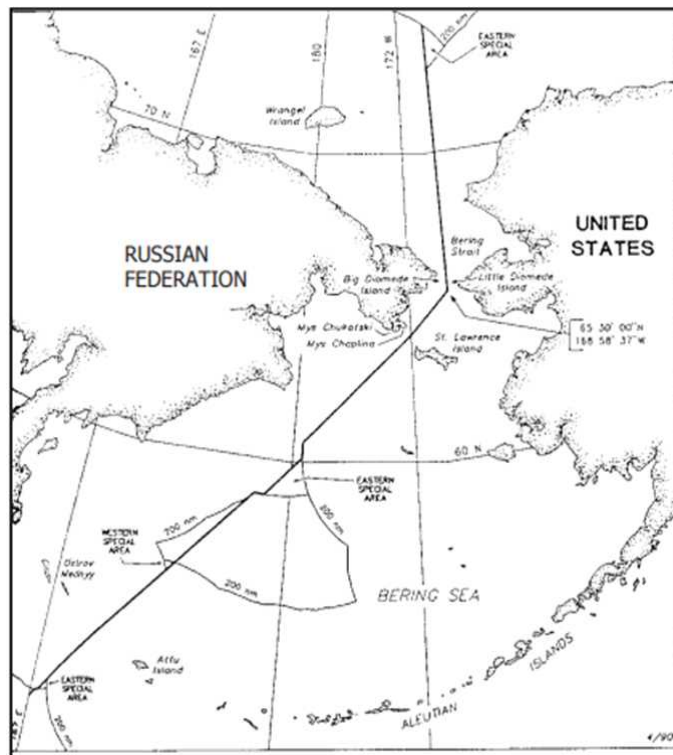
2) 특별 해상지역은 베이스라인으로부터 200해리를 초월하는 지역으로 1867년 해양경계선에 의거해서 각국이 보유하는 지역이었다. 특별 해상지역은 미국에 속해 있는 '동부 특별지역'이라 불리는 3개의 특별지역과 러시아에 속해 있는 1개의 '서부 특별지역'이 존재했었다. 1990년 해양국경 협정에서 러시아는 미국에 속해 있던 '동부 특별지역'의 주권과 관할권에 관한 모든 요구를 미국에 양도한 반면에 미국은 '서부 특별지역'의 주권과 관할권에 모든 요구를 러시아에 양도했다.

5.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각국은 임시협정을 맺어 비준까지 협약 조항을 준수했지만 러시아는 미국의 이익에 양보한다는 비난이 일면서 1990년 협약 비준에 대한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모스크바 타임스(The Moscow Times)는 고르바초프가 미국과의 양호한 양자관계에 대한 열렬한 열의 때문에 1990년 협약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장으로 세바르나제 소련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1990년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월권을 했다고 지적당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고르바초프와 세베르나제가 1990년 백악관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의 정당한 어업 해역을 미국에 양도하는 협약을 서둘러 서명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 의회는 이 협약이 러시아의 이익을 침해하고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서는 러시아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990년 해양국경 조약에 대해 러시아 전문가들은 어업권의 손실뿐만 아니라 잠재적 석유/가스전의 손실과 잠수함의 해군 통과권의 상실을 유발시켰다고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 국가두마는 이 조약에 대해 비준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어부들을 보호하고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림 2> 1990년 특별해역을 포함한 베링 해 경계선 지도



자료: Vlad M. Kaczynski, “US–Russian Bering Sea Marine Border Dispute: Conflict over Strategic,” *Russian Analytical Digest*, No.20, May 1, 2017,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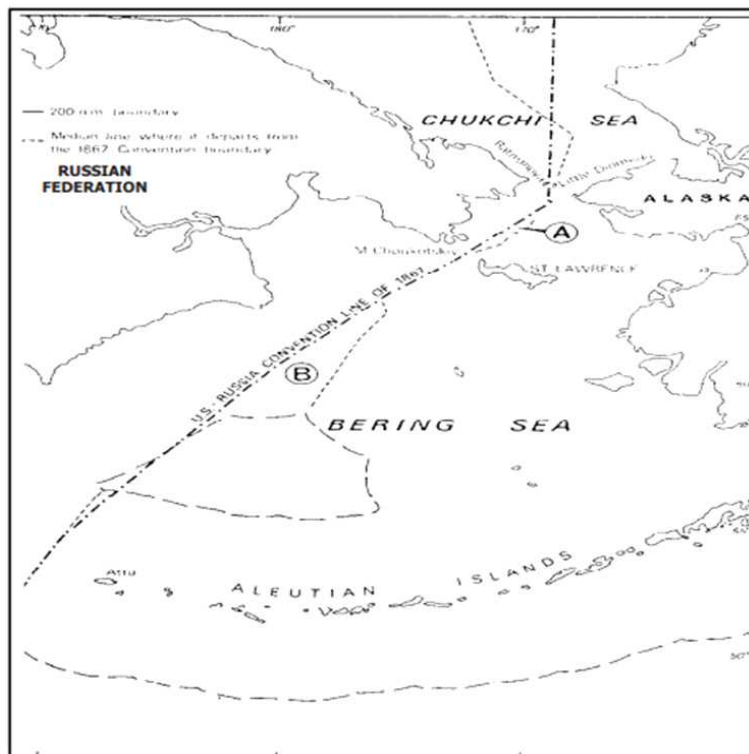
러시아 극동 어업계 이해관계자들은 1990년 협약에서 손실된 해역에 대한 보상으로 러시아

어부에게 15만 톤의 어획 할당량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러시아 고위관료는 “나는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약이 비준되는 조건으로 미국 측으로부터 연간 대구류 어획 쿼터가 대략 15만 톤에 이를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수치는 1980년대 양국 간 분쟁 해역에서 어류가 풍부했으며, 러시아 어획량의 추산에 의거한 러시아 자료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베링 해 수산물이 완전히 이용되어 왔으며 또는 고갈되는 상황 하에서 이와 같은 쿼터의 요구는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림 3> 1990년 해양 경계선과 등거리선 간 차이에 관한 전도



자료: 자료: Vlad M. Kaczynski, “US–Russian Bering Sea Marine Border Dispute: Conflict over Strategic,” *Russian Analytical Digest*, No.20, May 1, 2017, p. 4.

러시아 관점에서 1990년 협약은 여전히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다. 협약을 비준하려는 노력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상승하면서 1990년 협약에서 설정된 해양경계선은 시간 지남에 따라 더욱 취약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1990년 협정의 조항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확고부동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입장은 지속적으로 1990년 협약에 명시된 경계가 양국 간의 실질적인 해양경계라는 ‘일반적 국가관행’의 증거이며, 국제법에 의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관습법에서 ‘일반적 국가관행’과 ‘법적 확신(opinio juris)’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며, 관행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0년 협정에 의해 규정된 양국 간 해양경계선은 일반적 국가 관행의 증거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며, 이 협약의 준수를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다.

6. 러시아 활동의 도전

그러나 러시아 어선의 최근 활동은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매년 4-11월에 수 십척의 어선들이 해양국경선을 따라 미국 해역으로 이동하는 대구를 포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국경 수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어선의 수와 어획 능력은 미국 어업 관리자들에게 심각한 걱정거리를 만들고 있다. 특히 러시아 어선들의 대구 남획으로 미국 어업관리자들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거의 지속적인 해안경비대 소속 항공기 및 선박 순찰을 통해 미국 EEZ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러시아 어선의 호전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불법 어획을 행하고 있는 러시아 어선 기사르(GISSAR)를 나포하기 위해 미국 해안경비대 선박들을 러시아 어선 12척 이상이 에워쌌다. 해안경비선들이 미국 어업해역에서 활동하는 기사르(GISSAR)선의 나포와 에스코트의 시도에 대해 러시아 어선들은 충돌 위협을 행하면서 시위했다. 미국 EEZ 내에서 나포된 많은 러시아 어선들은 미국 해안경비대의 검사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있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면서 미국은 준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선에 대해 경고와 무력화 차원에서 총격 발포를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의 수단은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7. 해결을 위한 모색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국 국무부와 러시아 외무부 간 회담이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1990년 협정이 구속력을 가지며 양국 간 해양경계를 구성한다는 견고한 충실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997년 이 협정의 비준을 위해 러시아연방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일련의 어획 쿼터를 허용하는 제안이 있었지만 최근에 미국은 이 제안을 철회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법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양국 간 해양 경계에 관한 최종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990년 협약의 비준이나 다른 협약의 비준이 없을 시 베링 해 국경문제의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II. 러시아와 일본의 오토츠크 해 쿠릴 4개 섬 영유권 현황과 이슈³⁾

1. 개요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 열도 4개 섬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 한 번도 합의하지 않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평화협정에도 서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현재 남방 쿠릴열도 4개

3) 이 글은 다음의 글을 번역해서 요약했음. Vlad M. Kaczynski, "The Kuril Islands Dispute Between Russia and Japan: Perspectives of Three Ocean Powers," *Russian Analytical Digest*, No.20, May 1, 2017, pp. 6-8.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은 4개 섬을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련은 남방 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한 확고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옐친 집권 시기 러시아의 입장은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진전은 없었다. 푸틴 집권 시기 이후 양측 모두 4개 섬의 양보의 의사가 없어 상황은 여전히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은 일본이 미국 태평양 군대에 항복했을 때 1945년 8월 14일에 끝났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 회의는 공식적으로 미국과 일본 간의 적대 행위를 종식시켰다. 그러나 전쟁이 종료된 지 현재까지 러시아와 일본 간 갈등을 종식시키는 평화조약에 양국은 서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평화조약 체결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일본 홋카이도 섬 북부 연안의 쿠릴열도에 있는 네 개의 작은 섬에 대한 국경 분쟁이다. 일본인들은 이 섬들을 '북방영토'라고 부르고 있다.

쿠릴 열도는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남쪽 끝에서 일본의 홋카이도 섬 북동부까지 750마일(1,200킬로미터) 뻗어 있다. 이 열도에 위치한 56개 섬 면적은 6,000평방 마일(1만 5,600평방킬로미터)이며, 러시아 사할린 섬과 함께 러시아연방 사할린 주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쿠릴 열도는 원래 17-18세기에 러시아인들이 정착해왔다. 일본은 남부 쿠릴을 점령했으며, 1875년에 전 쿠릴 열도를 획득했다. 2차 세계대전 후 쿠릴 열도는 소련에 양도되면서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었으며, 소련 인이 이주했다. 일본은 여전히 쿠릴 남부 4개 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쿠릴 열도 영토 논란은 홋카이도 북서쪽에 약 589마일 혹은 948킬로미터 길이를 가진 사할린 섬의 지위와 관련이 있다. 사할린 섬은 러시아인과 일본인들이 수세기에 걸쳐 정착했지만 러시아와 일본은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에 의거해서 18개의 쿠릴 열도 섬들을 일본에 양도하고 사할린 섬을 러시아가 차지하는 데 합의했다. 그 후 1905년 러일 전쟁이 종료되면서 일본은 사할린 섬 50도 이남의 지역을 차지하게 됐다. 일본은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사할린 전체 지역을 장악했지만 1924년에 사할린 섬 50도 이북 지역을 포기했다. 최종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소련은 사할린 섬과 쿠릴 열도를 장악하면 일본인들을 강제로 송환시켰다.

쿠릴 열도와 사할린 섬은 화산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1995년 사할린 대지진으로 약 2,000명이 사망했다. 당시 사할린 인구수는 68만 명이었다. 쿠릴 열도는 35개 활화산이 존재하고 있다. 쿠릴 열도는 행정적으로 러시아연방 사할린 주가 관리하고 있다. 쿠릴 열도의 인구수는 1994년 대지진 이후 절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약 1만 6,000명으로 감소했다. 이 열도에는 소련 시대보다 수치는 적지만 현재 약 3,500명의 국경수비대 군인이 체류하고 있다. 소련 시대 쿠릴 열도는 중요한 국경수비대의 전초기지로 간주돼왔다. 소련 군부는 쿠릴 열도를 전략 잠수함이 활동하는 오토츠크 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라 강조했다. 쿠릴 열도의 주요 산업은 어류 가공, 수산업, 개 잡이이며 상당부분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때 소련 정부에서 애지중지하고 높은 봉급을 받은 쿠릴 열도 주민들은 소련 붕괴 이후 모스크바는 쿠릴 열도에 대해 홀대한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쿠릴 열도 주민들은 일본 북부지역과의 긴밀한 관계로 발전을 도모했었다.

2. 일본의 요구

양국 간의 분쟁은 1945년 소련이 점령한 쿠릴 열도 최남단의 4개 섬의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홋카이도 섬에서 육안으로 남부 쿠릴 섬들을 볼 수 있으며, 수 세기 전에 일본의 일부로 지도로 제작되어 있어 쿠릴 4개 섬을 일본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회의에서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 가장 가까운 네 곳[쉬코탄(Shikotan), 에토로푸(Etorofu), 쿠나쉬리(Kunashiri), 조그마한 하보마이(Habomai) 제도]의 북쪽에 대한 어떤 요구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일본은 한국, 대만 남중국해 섬들, 대만 해협에 위치하는 90개 섬으로 이루어진 평후(Penghu) 혹은 페스카도르(Pescador) 제도, 일본의 남극 영토를 포기했다. 소련은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평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 이후 소련 붕괴 이후 새로운 러시아연방은 일본과 쿠릴 열도의 이슈를 재검토하는데 합의했다.

3. 미국의 관점

일본의 북방영토, 쿠릴 열도 분쟁에 관한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2개의 만연된 오해가 존재하고 있다. 첫 번째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얄타 회담에서 쿠릴 열도의 '전부(all)'를 소련에 양도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얄타 협정에서 '전부'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1945년 8월 스탈린과 트루먼 대통령 간 일련의 협상과정에서 트루먼은 '일반명령 1호(General Order No. 1)'에서 쿠릴 열도의 '전부'를 소련에 양도하는 데 동의했다. 전통적으로 쿠릴 열도의 남부 섬들은 홋카이도 섬의 일부라고 간주됐었다. 얄타 협정과 일반명령 1호에 관한 미국 무부의 해석은 쿠릴 열도의 주권을 소련에게 양도하는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쿠릴 열도의 최남단 섬들의 소련 점령은 일시적 군사 활동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오해는 미국무성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 1953년부터 1959년 5월 24일에 사망할 때까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래에서 제52대 국무 장관) 장관이 일본 외무성 시게미쓰 마로루(Mamoru Shigemitsu, 일본어: 重光 葵, 1887년 7월 29일 ~ 1957년 1월 26일) 장관에게 "일본의 남부 쿠릴 열도의 반환요구를 포기하고, 미국은 오키나와를 영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1956년 소위 말하는 '덜레스 위협 사건(Dulles Threat Incident)'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 특히 소비에트 학자들은 '덜레스 위협 사건'을 일본과 소련의 친선관계의 개선에 공격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인지했다. 그러나 새로이 기밀 취급에서 제외된 문서들은 덜레스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지원의 지렛대를 제공하면서 일본 협상가를 위해 실제적으로 지원을 모색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학자들의 비판과는 달리 쿠릴 섬 영토분쟁에 관한 미 정부의 정책은 공식 평화조약이 부재한 가운데에서도 쿠릴 4개 섬은 일본 영토라라고 일관성 있게 지지한다는 것이다.

4. 러시아의 관점

소련방 해체 이후 열친 시대 때 러시아와 일본 간 쿠릴 영토문제 협상에 일련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여러 정부 간 문서들에서 크렘린은 이투루프(Iturup), 쿠나쉬리(Kunashiri), 쉬코탄(Shikotan), 하보마이(Habomai) 섬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했으며, 일본에 4개 섬을 양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텍스트들은 1993년과 1998년 도쿄와 모스크바 선언, 1998년 ‘해양생물자원을 위한 어업 협정’에서 포함됐다. 이 문서들은 2000년에 양국의 평화 협정 체결을 완료하고 21세기에 양국 간 신뢰와 효율적 파트너로 진입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푸틴이 집권한 이후 크렘린은 쿠릴 영토에 대한 러시아 주권은 확고하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영토문제는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남부 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거부하는 소련의 입장은 확고했으며, 국제협정에 부응하는 기초에 근거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 면적은 전체 쿠릴 열도 면적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 중 3개의 큰 섬으로 이투루프 섬과 쿠나쉬르 섬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에트 관점은 공식적으로 1989년에 표명됐다.

남부 쿠릴 열도에 관한 소비에트의 주요 입장은 다음과 같다:

- a) 소련은 남부 쿠릴 열도를 개발할 독점권 보유.
- b) 이 섬들이 일본의 일부로 속했을 때 인접국의 공격을 위한 발판이 되었으며, 특히 1941년 진주만 공격과 러시아와 소련의 중립 협정이 발효될 때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의 소비에트 민간 선박의 공격이 그 예이다.
- c)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침략 국가였다. 여러 국가를 공격한 일본은 패전국으로 쿠릴 열도를 포함한 영토의 일부를 할애하는 것은 승전국의 처벌 대가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d) 국제적 합의의 수정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대한 의문점 제기와 대등하다는 입장.
- e) 소련은 평등과 호혜를 바탕으로 협력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후 국경선 확보’ 의지를 표명.

문제는 여러 합의에 서명함으로써 사실상 일본이 4개 섬에 대한 러시아 점령을 인정함에 따라 종료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소비에트 말기 국력의 약화와 고르바초프와 열친 간의 경쟁과 마찰로 인해 소비에트 대외정책, 특히 ‘쿠릴 이슈’는 투쟁의 무기가 되었다.

소련의 마지막 날 열친과 그의 측근들은 남부 쿠릴 열도를 양도하거나 혹은 200-500억 달러 비용으로 판매하는 쪽으로의 제안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1990년 열친의 일본 방문 시 열친은 ‘쿠릴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5단계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5단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1) ‘쿠릴 문제’의 공식적 인정
- 2) 남부 쿠릴 열도의 비군사화 조치
- 3) 남부 쿠릴 열도의 자유기업지역 선언
- 4) 평화조약 체결과 남부 쿠릴 열도의 ‘통합 관리’ 설치
- 5) 미래 정치인 세대에 의한 쿠릴 문제의 전반적 개요.

옐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옐친은 5단계 계획을 정부 어젠다에 삭제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공식적 차원에서 공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단계 계획안은 여전히 쿠릴 영토문제에 관한 크렘린 정책은 '비밀' 기반에 근거를 이루고 있었다. 게다가 여러 문서들에서 남방 쿠릴 열도를 러시아 영토의 일부로 결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전문가들은 이 사실을 결코 수용하지 않았다.

옐친 재임 기간 동안 도쿄와 모스크바 선언에서도 쿠릴 4개 섬 반환에 대한 일본 요구를 인정했다. 도쿄 당국이 정기적으로 양자관계의 기저로 언급하는 1956년 소련과 일본의 공동선언에서 2개의 작은 섬, 하보마이와 쉬코탄에 대한 반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큰 섬인 쿠나쉬르와 이투루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물론 2개의 작은 섬에 대한 반환도 평화조약 체결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언급했다.

과거의 유사한 문서들과 달리 도쿄 선언이나 모스크바 선언에서도 러시아 의회의 정부 간 협약으로 비준되지는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불리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옐친 행정부가 비준을 위한 문서들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러시아 의회의 최종적 거부를 유발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옐친의 5단계 계획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단계 계획의 핵심 구성요소가 구현되었다. 따라서 영토문제의 인식이라는 제1단계는 1994-1996년 심각한 문제없이 신속하게 달성됐다.

쿠릴 4개 섬의 비무장화의 제2단계 계획안은 약간의 진전만 실현됐다. 그 결과 쿠릴 지역 국경수비대와 소규모 해군 기지 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홋카이도 섬에서 일본 군대의 수치가 증가했으며 최첨단 군비 증강으로 전투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1990년대 러시아 국력의 약화의 징후로서 국방비 삭감을 보면서 일본은 러시아 남부 쿠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일본 어선의 활동을 승인함으로써 러시아 영토에 대한 전례가 없는 압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일본의 어업 위반 건수는 1만 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연방 국경수비대장 니콜라예프(A. Nikolayev)는 러시아 해역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어선에 대한 발포를 포함한 해군의 군사적 활동의 업무를 승인했다.

이러한 일련의 대치국면은 옐친의 5단계 전체 계획을 위협했다. 양국은 신속한 외교적 합의를 통해 일본 어선이 러시아 해역에서 어업을 조업할 수 있는 협상을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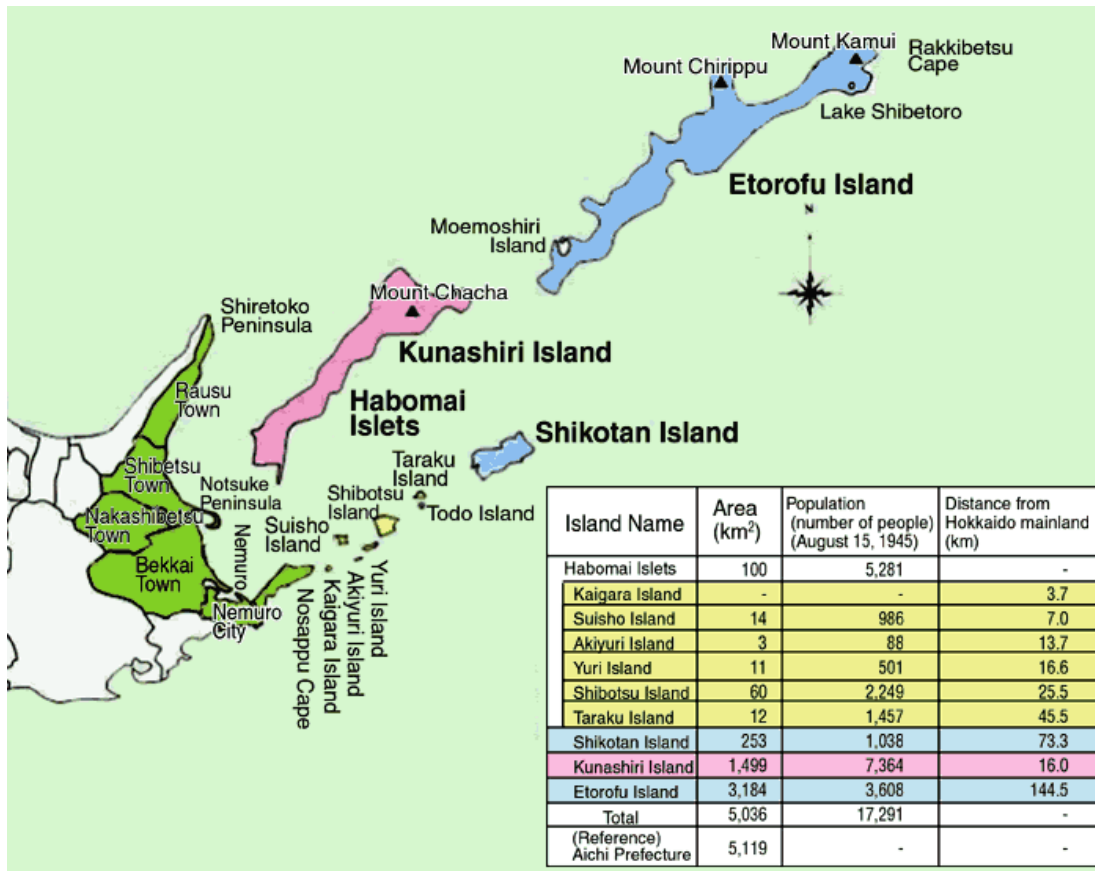
자유기업을 장려하는 제3단계는 쿠릴 4개 섬에 일본시민의 노(No)비자 방문, 1998년 어업 조약의 협정, 일본의 인도주의적 지원, 일본 기업계의 남 쿠릴 열도의 투자 지원에 대한 러시아 측의 호소 등이 이루어졌다.

양국 간 평화협정의 서명이라는 4단계 프로그램은 1993년과 1998년 선언에서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옐친 측근인사가 처음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평화조약은 '국경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미래의 러시아와 일본 간 협력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라는 정의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유감스럽게도 푸틴 시대에서도 평화조약 체결에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영토반환에 대한 푸틴의 입장은 러시아 영토의 통합성에 관한 여러 진술에서 명백하게 표현되고 있다. 특

히 1999년 9월 3일 유주노-사할린스크 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누구도 남부 쿠릴을 양도한다는 정부 계획안을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협상을 하며, 영토 문제를 인정하지만 남부 쿠릴의 양도는 없을 것이다.” 러시아와 일본 어느 측도 영토 양보를 꺼려하면서 상황은 교착상태이다.

<그림 4> 쿠릴 열도 지도



자료: The Japanes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romotion of the land region of adjoining Northern Territories,”

http://www.mlit.go.jp/english/2006/m_hokkaido_bureau/22_northern-territories/index.html (검색일: 2013년 9월 15일).

<2007-2015년까지 쿠릴열도(사할린 주)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에 32억 6,850만 5,000 루블(전체 연방예산의 0.09%) 연방예산의 투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쿠릴열도 프로그램은 일본과의 남부 쿠릴 4개 섬의 영토분쟁의 해결이라는 안보적 측면 이외에도 주민의 생활수준의 상승과 주거환경 개선, 어업활성화, 교통인프라(도로, 항만, 공항 등)구축, 에너지 생산 증가, 외자유치를 위한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 5월에 쿠릴열도 특별프로그램의 3단계 연방예산안이 편성됐다. 3단계(2015-2025년)에 총예산 670억 401만 4,300; 연방예산 261억 8,831만 9,000; 주정부예산 301억 6,252만 3,300; 특별예산 106억 5,310만 루블의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⁴⁾

[부록]:

쿠릴 열도는 56개의 섬과 수많은 조그마한 암초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면적은 1만 503.2 평방킬로미터(사할린 주 전체면적의 12%)로서 가장 높은 산은 2,339미터의 알라이드(Alaid) 산이다. 이 열도의 행정구역은 러시아연방 사할린 주에 속해 있으며, 북 쿠릴스크, 쿠릴스크, 남 쿠릴스크 지구로 구분된다. 2010년 기준으로 이 열도의 인구수는 1만 9,434명이다.

두 개의 구릉지대[큰(볼쇼이) 구릉지와 낮은(말로이) 구릉지]가 오토츠크 해와 태평양을 분리시키고 있다. 볼쇼이 구릉지대는 캄차트카 반도의 북쪽부터 일본 홋카이도 남쪽까지 1,200km로 펼쳐져 있다. 쿠릴열도는 56개 섬과 수많은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가장 큰 섬으로는 파라무쉬르(Paramushir), 시무쉬르(Simushir), 우루프(Urup), 이투루프(Iturup), 쿠나쉬르(Kunashir) 등이다. 쿠릴열도는 주로 산악지형이며, 화산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산악의 고도는 대부분 500-1,000m 정도이다. 가장 높은 곳은 아트라소프 섬에 위치한 알란(Alan)산으로 정상은 2,339m, 쿠나쉬르 섬에 위치한 타타(Tyatya)산의 정상은 1,819m, 파라무쉬르 섬에 위치한 치쿠라치키(Chikurachki)산은 1,816m와 푸사(Fussa)산은 1,772m, 이투루프 섬에 위치한 스토카르(Stokar)산은 1,634m, 보그단 흘렘니츠키(Bogdan Khmel'nitsky)산은 1,589m, 시무쉬르 섬에 위치한 밀나(Milna)산은 1,539m이다. 마투아 섬에 위치한 사리체바(Sarycheva)산은 1,446m이다. 쿠릴열도의 화산 수는 160여개이며, 그중 약 40여개는 활화산이다. 말로이 구릉지대는 120km 정도로 홋카이도 섬부터 북동쪽으로 펼쳐져 있다. 이 구릉지대에는 6개의 작은 섬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고도는 해수면으로부터 20-40m로 평편한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쉬코탄(Shikotan) 섬을 제외한 섬들은 고대 화산 폭발의 결과로 인해 낮은 구릉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⁵⁾

쿠릴열도의 기온은 일반적으로 쌀쌀하지만 온화한 몬순기후대와 해양성 기후에 영향을 받고 있다. 가장 추운 2월의 평균기온은 영하 6-7도(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이며, 북부 쿠릴에서 8월의 기온은 영상 10도, 남부 쿠릴은 영상 17도이며, 최고 기온은 영상 31도를 기록하고 있다. 쿠릴 열도의 식물성장 기간은 연간 110-180일이다. 쿠릴열도의 연간강우량은 북부 쿠릴에 600mm, 남부 쿠릴에 1,400mm로 다양하다. 여름철에 종종 많은 강우량과 짙은 안개가 빈번하며, 태풍이 동반할 경우에 초속 40미터를 상회하는 강풍으로 인해 항해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겨울철에 눈보라와 폭풍이 발생한다. 태양이 많이 비추는 계절은 주로 가을이지만, 가을에는 강력한 태풍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⁶⁾

쿠릴 열도에 하천과 개천의 수는 약 4,000여개이다. 쿠릴 구릉지대의 가장 큰 섬들은 수많은 하천과 개천을 통해 절단되고 있다. 쿠릴열도에는 화산의 분화구를 포함한 수많은 호수들이 있다. 호수들은 원뿔꼴의 용암이 막힌 결과로 형성되고 있다. 석호들은 해안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쿠릴열도의 해안은 주로 가파르거나 혹은 계단식을 형태를 띠고 있다. 하천의 물줄기는 리프트 형태이며 아름답고 독특한 폭포가 많은 편이다. 그 예로써 '늙은 수도사 텍수염(Борда старого монаха)'폭포, '미인의 머리(Волосы красавицы)'폭포 등이다. '일

4) Проект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2014)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21.05.2014.

<http://minvostokrazvitia.ru/upload/iblock/25f/KO2025.pdf> (검색일: 2014.08.25)

5) Атла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часть 2 (ВТУ ГШ, 1994), pp. 2-3.

6) Pavel A. Minakir and Gregory L. Freeze, *The Russian Far East ...*, p. 7.

무로메츠(Ilya Muromets)'폭포는 러시아연방에서 가장 높은 폭포로 그 높이는 141m이다.

쿠릴열도는 화산작용으로 덕택으로 수많은 온천과 풍부한 화학성분을 함유한 광천수를 보유하고 있다. 쿠릴스크, 유주노-쿠릴스키, 타타 등이 지역에 수많은 수(水)치료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

쿠릴열도는 독특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다. 쿠릴 열도의 북쪽에 위치한 섬에서는 오리나무 속의 식물류와 왜소한 시베리아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 쿠릴 열도의 남부 섬에서는 전나무와 잎이 무성한 상록수, 뽕나무, 떡갈나무의 숲과 대나무 숲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아열대성 식물로서 주목(상록수), 쿠릴 대나무, 야생포도, 수국 등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극지대 경계선의 식물로서 고산굴곡림, 소나무, 오리나무, 돌 자작나무 등이 자라고 있다. 타이가지대에서 광범위하게 낙엽송, 자작나무 등이 자라고 있다. 쿠릴열도 자연의 미스터리인 거대한 허브인데 그 크기는 때때로 3-4m에 이르고 있다. 말로이 구릉지대 남부지역에서 고유종인 '글렌 백합(Glen's Lily)'과 '쿠릴 목련'이 자라고 있다.⁷⁾

쿠릴열도의 동물도 다양하다. 곰, 흰 단비, 여우, 다람쥐, 포유동물 등이 서식하고 있다. 쿠릴열도 해안의 암석에 수많은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연어과에 속한 생선들이 바다와 하천에서 서식하고 있다. 고대 시대부터 쿠릴열도는 바다표범, 바다사자, 물개, 수달과 같은 해양 동물의 거주지였다.⁸⁾

<표 1> 사할린 주 북 쿠릴스크 행정지구

섬	러시아명	일본명	대안 명	섬 그룹	주도/상륙지	기타 도시	면적(km ²)	인구수
Severo-Kurilsky District			North Kurils	North Kurils (Kita-chishima/ 北千島)	Severo-Kurilsk	Shelikovo, Podgorny, Baikovo	3,504.00	2,560
Shumshu	Шумшу	占守島	Shumushu	North Kurils	Baikovo		388.0	20
Atlasov	Атласова	阿頼度島	Araido	North Kurils	Alaidskaya Bay		150.0	0
Paramushir	Парамушир	幌筵島	Paramushiru, Horomushiro	North Kurils	Severo-Kurilsk	Shelikovo, Podgorny	2,053.0	2,540
Antsiferov	Анциферова	志林規島	Shirinki	North Kurils	Antsiferov beach	Cape Terkut	7.0	0
Makanrushi	Маканруши	磨勘留島	Makanru	North Kurils	Zakat		50.0	0
Awos	Авось	帆掛岩	Hokake, Hainoko	North Kurils			0.1	0
Onekotan	Онекотан	温禰古丹島		North Kurils	Kuroisi, Nemo, Shestakov		425.0	0
Kharimkotan	Харимкотан	春牟古丹島	Harimukotan, Harumukotan	North Kurils	Sunazhma	Severgin Bay	70.0	0
Ekarma	Экарма	越渴磨島	Ekaruma	North Kurils	Kruglyy		30.0	0
Chirinkotan	Чиринкотан	知林古丹島		North Kurils	Cape Ptichy		6.0	0
Shiashkotan	Шиашкотан	捨子古丹島	Shasukotan	North Kurils	Makarovka		122.0	0
Lowuschki Rocks	Ловушки	牟知列岩	Mushiru	North Kurils			1.5	0
Raikoke	Райкоке	雷公計島		North Kurils	Raikoke		4.6	0
Matua	Матуа	松輪島	Matsuwa	North Kurils	Sarychevo		52.0	0
Rasshua	Расшуа	羅處和島	Rashowa, Rasutsua	North Kurils	Arches Point		67.0	0
Srednego	Среднего	擗手岩	Suride	North Kurils				0
Ushishir	Ушишир	宇志知島	Ushishiru	North Kurils	Kraternya	Ryponkicha	5.0	0
Ketoy	Кетой	計吐夷島	Ketoi	North Kurils	Storozheva		73.0	0

7) Атла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часть 2 (ВТУ ГШ, 1994), pp.2-3.

8) 쿠릴 열도의 지리적 개요는 다음의 글을 참조. 한종만, “러시아 사할린 주 인적자원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시베리아 연구』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제17권 2호, 2013년, pp. 8-13.

자료: “Kuril Islands,”from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Kuril_Islands (검색일: 2018년 3월 18일).

<표 2> 사할린 주 쿠릴스크 행정지구

섬	러시아명	일본명	대안 명	섬 그룹	주도/상륙지	기타 도시	면적(km ²)	인구수
Kurilsky District			Middle Kurils ((Naka-chishima / 中千島)		Kurilsk		5,138.4	6.606
Simushir	Симушир	新知島	Shimushiru, Shinshiru	North Kurils	Kraternyy	Srednaya bay	366.0	0
Broutona	Броутона	武魯頓島	Buroton, Makanruru	North Kurils	Nedostupnyy		7.0	0
Chirpoy	Чирпой	知理保以島	Chirihoi, Chierupoi	North Kurils	Peschanaya Bay		21.0	0
Brat Chirpoyev	Брат Чирпоев	知理保以南島	Chirihoinan	North Kurils	Garovnikova	Semenova	16.0	0
Urup	Уруп	得撫島	Uruppu	North Kurils	Mys Kastrikum	Mys Vander-Lind	1,450.0	4
Other				North Kurils			4.4	0
Iturup	Итуруп	択捉島	Etorofu	South Kurils	Kurilsk	Reidovo, Kitovyi, Rybaki, Goryachiye Klyuchi, Kasatka, Burevestnik, Shumi-Gorodok, Gornyy	3,280.0	6,602

자료: “Kuril Islands,”from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Kuril_Islands (검색일: 2018년 3월 18일).

<표 3> 사할린 주 남 쿠릴스크 행정지구

섬	러시아명	일본명	대안 명	섬 그룹	주도/상륙지	기타 도시	면적(km ²)	인구수
Yuzhno-Kurilsky District			South Kurils	South Kurils (Minami-chishima/ 南千島)	Yuzhno-Kurilsky	Malokurilskoye, Rudnaya, Lagunnoye, Otrada, Goryachiy Plyazh, Aliger, Mendeleyevo, Dubovoye, Polino, Golovnino	1,860.8	10,268
Kunashir	Кунашир	国後島		South Kurils	Yuzhno-Kurilsky	Rudnaya, Lagunnoye, Otrada, Goryachiy Plyazh, Aliger, Mendeleyevo, Dubovoye, Polino, Golovnino	1,499.0	7,800
Shikotan Group	Шикотан	色丹列島		South Kurils	Malokurilskoye	Dumnova, Otradnaya, Krabozavodskoye (formerly Anama), Zvezdnaya,	264.13	2,440

						Voloshina, Kray Sveta		
Shikotan Island	Шикотан	色丹島		South Kurils	Malokurils koye	-	255.00	2,440
Other				South Kurils		Ayvazovskovo	9.1	0
Khabomai	Хабомаи	齒舞群島	Habomai	South Kurils	Zorkiy	Zelyonyi, Polonskogo	97.70	28
Polonskogo	Полонского	多楽島	Taraku	South Kurils	Moriakov Bay station		11.57	2
Oskolki	Осколки	海馬島	Todo, Kaiba	South Kurils				0
Zelyonyi	Зелёный	志発島	Shibotsu	South Kurils	Glushnevskiy station		58.72	3
Kharkar	Харкар	春莉島	Harukaru, Dyomina	South Kurils	Haruka		0.8	0
Yuri	Юрий	勇留島	Yuri	South Kurils	Kalernaya		10.32	0
Anuchina	Анучина	秋勇留島	Akiyuri	South Kurils	Bolshoye Bay		2.35	0
Tanfilyeva	Танфильева	水晶島	Suishō	South Kurils	Zorkiy	Tanfilyevka Bay, Bolotnoye	12.92	23
Storozhevoy	Сторожевой	萌茂尻島	Moemoshiri	South Kurils			0.07	0
Rifovy	Рифовый	オドケ島	Odoke	South Kurils				0
Signalny	Сигнальный	貝殻島	Kaigara	South Kurils			0.02	0
Other				South Kurils		Opasnaga, Udivitelnaya	1.0	0
Total				South Kurils			10,503.2	19,434

자료: "Kuril Islands," from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Kuril_Islands (검색일: 2018년 3월 18일).

시베리아 민족들의 결혼 문화

계용택(러시아리서치 대표)

시베리아 대부분의 민족들은 결혼에 있어 부모간의 중매로 성사되며, 만약 부모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중매를 대신해 준다. 예를 들면 아버지는 아들의 신부될 사람을 선택하고 큰형은 막내 동생을, 삼촌은 조카의 신붓감을 선택하는데 신붓감을 소개받은 이들은 소개받은 신부를 만족스러워 해야만 한다. 이슬람교도들을 비롯하여, 시베리아에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 1명 이상의 아내를 가지는 것을 허용한다. 이슬람 민족은 법률에 따라 아내의 숫자가 4명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다른 민족들에게는 적용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민족들의 아내 숫자가 4명까지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아내를 둔 사람은 대단한 부자임을 의미한다.

회교법에 따르면, 만약 남편이 2번째 또는 3번째 부인을 원한다면 본처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나 친족들에 의한 중매로 인한 결혼계약은 초혼에 한정 되었다. 아들은 결혼하면 바로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며 이후의 결혼과정은 자기의지대로 할 수 있다.



나나이족

야쿠트 민족 부모들은, 특히 나이가 많은 부모들 중에서, 자신의 아들을 아주 어린나이에 결혼을 시킨다. 이 경우 부모들은 노년에 어린 부부로 부터 즐거움과 위로를 얻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성숙한 나이가 될 때까지 보살핀다. 또한 만약 신랑이 약속한 신부와 결혼할 때가 왔으나 아직 신부가 어리면 다른 민족의 신부와 결혼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때때로 부모들은 아직 출생하지 않은 아들의 결혼에 대해 미리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민족에서 결혼의 시기는 사춘기의 도래로부터 시작 된다. 일반적으로 사춘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신랑 신부는 이때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사춘기가 되어야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적 건강 및 경험이 축적되기 때문이다.¹⁾

신부는 가정에서의 살림살이 및 손재주가 필수적이었다. 비록 신부의 미모도 관심을 끌지만 가사 살림살이만큼은 중요하지 않다. 예니세이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의 경우 5살 에서 10살까지의 소녀가 같은 나이 또는 좀 더 나이가 많은 남자아이에게 시집을 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16살의 남자아이는 7살인 아내와 동거를 하고, 간혹 소년이 15~20살의 신부와 결혼을 하는

1) http://drevlit.ru/texts/m/Miller_8/text29.php



추코트카 여성들



의복을 치장한 캄차카 원주민

경우도 있다.

시베리아 거주 대부분의 민족들에게 결혼풍속에 있어 신부를 사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다. 신부에게 주는 결혼사례금은 타타르어로 <칼룬> 또는 <칼룸>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를 러시아어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토볼스크, 튜멘, 톰스크의 마을들에 사는 회교도 타타르 민족에게는 신부에게 주는 결혼사례금이 명문화되었는데, 계약에 따라 다른 물건으로도 지불할 수 있다.²⁾

예를 들면 빈곤한 원주민은 신부에게 주는 사례금이 5~10루블을 초과하지 않지만 타타르 민족은 아름답고 부유한 명문가문 출신 신부에게 30~50루블을 제공한다. 에니세이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정교를 받아들인 후에 결혼사례금으로 단지 중국제 옷감이나 사라사로 만든 의복으로 대신 하였다.

산림지역에 사는 통구스 민족은 결혼사례금으로 10~20마리의 순록을 신부 부모에게 주었다. 사모예드, 유카기르, 코랴크, 축치 민족들도 순록을 결혼사례금으로 제공하였는데 부유한 민족일 수록 결혼사례금의 규모가 증가하였다. 타타르 민족은 자신의 딸이 결혼을 할 때 일부는 결혼사례금을 받았고 일부는 받지 않았다.

만약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남편은 아내를 판매할 수 없으나 아내를 그녀가 가지고 온 지참금과 함께 아내의 친가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때 아이는 남편이 소유하게 된다. 신부의 지참금은 결혼사례금의 절반가량 형성되었는데 신부 부모의 재산정도, 아이의 숫자, 부모가 딸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규모가 정해졌다.

그리고 신부의 부모가 신부를 위해 지불 할 수 있다면 신부는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만 되고, 그럴수록 신부 부모에 제공하는 결혼사례금은 증가한다. 또한 신부에게도 신랑의 재산소유 정도에 따라 순록 또는 다양한 가축들이 주어진다.

보통 신부의 지참금은 결혼사례금의 절반정도이나 신부 아버지가 아들이 없고 딸을 매우 사랑할 경우 신부인 딸에게 결혼사례금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지참금을 제공할 수도 있다.

아주 드물게는 신부가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신부가 매우 빈곤하거나 신부 부모측이 극단적인 탐욕이 있을 경우다. 풍습에 따르면 신부의

2) <http://www.socialcompas.com/2017/06/09/gerhard-fridrih-miller-opisanie-sibirskih-narodov/>



캄차카 원주민

아버지는 딸에 규정된 지참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신부의 부모는 비록 많은 결혼사례금을 받아도 자신의 딸에게 자신의 의지로 지참금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집갈 나이의 신부들은 실제적으로 매매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부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신랑이 신부 부모에게 주는 결혼사례금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³⁾

가난한 사람들은 딸을 아들보다 더 많이 키우면 행복하다고 여겼다. 부모들은 딸을 판매해서 재산을 획득하지만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재산을 소비해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결혼사례금은 현물이 아닐 수도 있다. 만약 혼인 당사자 가족 간에 2쌍이상이 결혼을 한다면 서로간의 결혼사례금 및 지참금에 대한 지불 없이 혼인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혼인 계약의 형태는 주로 퉁구스 민족에게서 볼 수 있다. 캄차카 및 쿠릴

원주민들에게는 특별한 풍습이 있는데 신랑은 결혼사례금을 주는 대신에 수년 동안 신부를 위해 노동을 제공해야만 한다.

약혼자는 자신의 신부될 사람의 아버지 또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자신의 노동 제공을 제안하고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결혼이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 때부터 약혼자는 미래의 장인 또는 신부 숙부의 환심을 얻기 위해 열성적으로 일을 한다. 이들 민족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후에도 다른 민족처럼 조건을 붙인 가격으로 신부를 판매하는 풍습을 여전히 간직하였다.

선교사들은 전적으로 기독교와 어울리지 않은 이런 풍습을 허가 하였다. 선교사 들은 이러한 풍습을 그만두도록 이들 민족을 설득하였지만 이들 민족은 이러한 풍습을 중단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 신부의 부모는 노동과 수고를 들여 키운 자신의 딸을 다른 문종으로 시집보내는 순간부터 딸에게서 최소한의 도움이나 배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베리아 민족들의 사고방식 기반에는 자신의 혈족만을 가문의 구성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른 종족이나 가문으로 시집간 딸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신부가 다른 종족으로 시집가는 순간부터 그녀의 혈족과는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이들 민족은 다른 가문으로 시집간 딸이 비록 자식을 낳았어도 가문의 일원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시베리아 민족들은 가문의 성(姓)이 가까운 친족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바탕에서 금지된 혈족 또는 사촌간의 결혼을 가능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신부가 다른 가문으로부터 왔고 또는 이전에 결혼계약을 했었다라면, 비록 신랑 신부가 매우 가까운 친족관계로 밝혀져도 아무도 결혼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3) http://ros-nauka.org/publ/obshhestvo/problemy_braka_i_semi_u_narodov_sibiri/1-1-0-5493



캄차카 원주민



야쿠트인

또한 신부가 신랑의 이모일 경우 및 신랑이 신부의 삼촌일 경우, 또는 신랑과 신부가 한 형제나 자매의 자식들인 경우도 결혼이 가능하다. 즉 2명의 친형제는 2명의 자매와 결혼이 가능하고, 더욱이 남자 한명이 2명의 자매와도 결혼이 가능하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가족의 2명의 자매와 결혼할 수 있고, 더욱이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가족의 어머니 및 딸과 결혼할 수 있다.

이들 민족들 가운데 단지 이슬람교도 및 기독교도들은 근친 결혼금지 규정을 지키고 있다. 야쿠트 민족에게는 결혼풍속과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특수한 관습을 가지고 있는데, 미망인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족과 재혼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레위인의 법>에 따르면 남동생은 아이를 가지지 않은 형수와 결혼을 하여야만 한다.

기본원칙으로 미망인은 자신의 죽은 남편 친족들의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결혼할 사망한 남편의 동생은 미망인이 아니라 가까운 친족들로 부터 자산을 물려받는다, 왜냐하면 신부 아버지에게 주는 결혼사례금 때문에 미망인은 이미 가문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망인이 생긴 가문은 그녀를 다른 가문에 또다시 결혼사례금을 받고 재혼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경

우가 발생할 때는 미망인의 품행과 솜씨가 친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이다. 만약 미망인을 모두가 좋아하고 그녀의 살림솜씨가 좋다면 이런 일은 아주 드물게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미망인의 재혼당사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된다. 남편이 죽은 계모는 보통 가장 나이 많은 의붓아들과 재혼한다. 그러나 만약 계모가 장남 보다 어린 형제와 더 가깝게 지낸다면 장남은 계모를 동생에게 주어야만 한다. 보통 미망인에게 주는 사례금은 초혼신부 부모님에게 주는 결혼 사례금보다 적다.

몇몇 민족들 특히 타타르 민족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관습이 널리 퍼져있다. 즉 홀아비는 신부를 납치해오고 이후 신부의 아버지와 결혼사례금에 대해 협상을 한다. 또는 약혼자 및 그의 부모, 친족들이 결혼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면 신부납치를 계획한다. 그밖에 신부가 부모가 선택한 신랑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 다른 구혼자와 스스로에 대한 납치 음모를 계획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 신부 친족들 또는 실제적인 법적 신랑은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신부 납치에 대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적인 난투가 발생하는데, 통구스 민족의 경우 서로 화살을 쏘기 때문에 자주 사람이 죽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다른 민족들은 몽둥이로 무장하여 싸우기 때문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야쿠트 여성

이러한 충돌에서 신부를 얻은 측은, 비록 결혼 이후 수년이 지나도 신부 부모에게 결혼사례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결혼사례금이 지불되는 동안, 지불이 모두 완료 될 때까지 신부 아버지는 딸에게 집안 살림 일을 시킬 수 있다. 신부는 결코 신랑에게 종속되지 않고 어떠한 서비스도 신랑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민족은 결혼사례금 지급이 시작되는 순간 신랑은 낮 또는 밤에 신부를 방문할 수 있으며 실제적인 동거 생활에 들어간다. 이슬람교를 믿는 타타르 민족은 결혼사례금 지급이 시작되면 즉시 신부를 격리시킨다. 신부를 위해 커다란 의자가 있는 특별한 침실을 마련하고 주위를 커튼으로 둘러친다. 이후 신부 부모가 조용히 집을 비우는 척 하면서 집안의 다른 곳으로 가면 신랑은 밤에 신부와 같이 있게 된다.

간혹 완전한 결혼계약이 성사되는 중도에서 결혼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 신랑이나 신랑 부모가 신부 부모들과 다툰 때 또는 신부가 신랑에게 흡족하지 않을 때, 신부가 신랑을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보쌌해서 데려가려고 할 때이다. 이러한 경우 자식의 존재여부, 이미 지불된 결혼사례금의 여부에 따라 양쪽집안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만약 신랑과 그의 부모가 결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미 지불한 결혼사례금은 신부측 소유가 되며 신부의 아이가 있을 경우 신부 아버지가 데리고 산다.

결혼사례금으로 몽고, 깔믹, 야쿠트, 산림민족의 경우 순록, 낙타, 말, 뿔 있는 가축, 암양으로 제공되는데, 만약 이들 가축이 새끼를 출산했다면 이 새끼들은 신부 아버지의 소유가 된다. 또한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사례금으로 주어진 가축이 죽거나 도난당할 경우, 또는 다른 불행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경우 대규모 만성적인 소송이 발생한다, 즉 신부 아버지가 고소를 당할 때 신부 아버지는 결혼사례금으로 받은 가축이 죽은 사실 또는 대규모로 가축이 도난당한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할 경우 증인들을 통하여 사실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신랑 신부 양측의 합의 아래 다툼 없이 결혼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면 남자 약혼자에게 결혼사례금은 반환되고, 신부의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우수한 말 또는 낙타,



부랴트족 소녀

황소, 순록을 제공한다.

만약 그 때까지 결혼사례금이 모두 지불되었다면 신랑 신부 양측 집안에서 결혼계약 체결을 주장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결혼식 날짜를 정한다. 결혼식과 관련하여 토볼, 튜멘, 톱스크 지역 타타르 민족은 사제 앞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신랑 신부는 재차 결혼을 원하는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한다. 마을 공동체의 정신적 지도자는 신랑에게 결혼생활에서 지켜야할 법률을 말하고, 이후 축복의 말을 전한다.

이슬람교를 믿는 민족에서는 다양한 지위의 사제가 있는데, 결혼을 주관하는 사제의 등급에 따라 결혼식 장소가 달라진다. 상류계층의 집안은 결혼식에 중간계급의 이슬람 성직자를 초대하고, 일반적인 집안은 단지 마을의 장로만을 초대한다.

시베리아 민족들의 널리 퍼진 풍습에서 부부 첫날밤에서의 처녀성 의미를 매우 중요시한다. 처녀성에 대해

여 이들 민족들은 육체적 및 의학적 특성에 대한 논거를 수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부나 젊은 아내가 누구에게 최초로 사랑의 즐거움을 선물하였는지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는 최소의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베리아 민족들에서 노비를 가지는 민족들은 보통 말하기를, 그들은 첩으로서 계집종을 소유한다고 한다. 그것 때문에 부부간 큰 불화나 난투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미개한 축치 및 카랴크 민족들은 꾸준히 이웃과 전쟁을 벌여 남녀 노비를 납치한다. 단지 이들 노비 여자들과 합법적으로 구입한 아내와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들은 상품(여자)을 전쟁을 통해 얻은 세속의 권리에서 얻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본질적으로 시베리아 민족들에게는 계집종과 아내사이에 큰 차별은 없다. 남편은 명령을 내리고 아내는 명령을 따르는 시종이었다. 남편과의 관계와 부부의 사랑에서 나오는 애정 때문에 아내는 노예상태를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캅차카반도 러시아 주민들은 러시아인 여성의 부재로 현지 계집종과의 결혼이 늘어났다. 아내는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해야 되고 남편의 옷 입는 것을 도우며 식사에 시종을 들어야 한다. 만약 남편이 아내를 돕고 싶어도, 그리고 식사를 하는 동안 아내를 식탁 옆에 앉히는 것도 용인되지 않았다. 동양의 민족들은 유럽인들의 여성에 대한 과도한 친절을 비웃고, 이러한 행동이 자연의 법칙을 위반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의 결과로 이들 민족에서 여자들은 그러한 종속성을 유지해 가고, 아내들 사이에 질투를 불러내지 않아 가족 사이의 불화는 적은편이다.

여성들이 남자에 대한 저항행위 및 남자를 따르지 않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개화된 민족들에서 노예상태로 부터 벗어나려는 자연적인 힘을 여성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남편이 금지된 관계들을 (자신의 아내와 첫번째의 결혼에서 얻은 아들과의 관계, 또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동생과의 관계) 발견한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벌을 줄 수 있다. 남편은 아내를

더 이상 자신의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장인에게 아내를 돌려보내며 결혼사례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아내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심부름 하는 계집종으로 제공할 수 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는 아내가 무능과 나태 때문에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수예에서 숙련된 기술이 없고 남편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이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더 이상의 실제적인 서비스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남편은 아내와의 이혼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된다. 결혼생활에 있어 무자식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만약 아내가 이러한 불행한 상황에서 현명하고 성품이 좋다면 남편은 아내의 슬픔에 대해 돕기를 노력한다. 그리고 아이를 못 낳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부부생활에 조금도 손상이 없이 또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할 수도 있다.

이슬람교 타타르 민족에서는 본처의 동의없이 2번째 3번째, 4번째 아내를 들이는 것을 법률로 막고 있다. 본처는 최초 또는 연장자 아내로서 지회계통 상부에 있으며 집을 관리하고 통치하며 나머지 아내들은 본처를 존중하며 복종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어린 아내들 중의 한명에 대해 편애하고 사랑을 더 주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편애대상이 되는 아내는 나머지 아내들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보유하고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남편 스스로 아내들에게 권유하는 결혼생활 유지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다.



크라스노야르스크 샤만

한편 사랑의 공유는 발생하지 않는다. 3~4명의 아내를 가진 남편은 1명의 아내를 가진 남편처럼 각각의 아내를 사랑한다. 각각의 아내는 남편이 그녀에 주는 사랑의 일부에 대한 만족한다.

남편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만약 아내들 가운데 1명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어도, 남편은 다른 아내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 동거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일부다처제를 도입한 모든 민족들의 기본원칙이다. 각각의 아내는 남편의 신체에 대해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남편이 이 같은 권리를 박탈하고자 하면, 남편의 권력이 통제하지 못하는 아내들 간의 항시적 다툼 또는 난투가 발생할 수 있다. 아내들 간의 갈등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아내는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개별적으로 남편과 밤을 지낸다.

몽고민족, 칼릭민족, 부랴트민족, 야쿠트 민족, 쿠즈네쯔 및 크라스노야르 타타르 민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남편은 다수의 아내를 둘 수 있다. 즉 각각의 아내가 자신의 유목민 천막 또는 집에 살고 있고 자신의 경제수단, 가축, 하인들을 소유할 때만 가능하다. 남편은 자신의 집이나 가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교대로 아내의 집을 손님으로 방문하여 아내들 간의 불화

및 난투를 예방한다.

각각의 아내는 가지고 온 지참금과 부모나 친족으로 부터 받은 가축의 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내키지 않지만 선물형식으로 재산이 적은 다른 아내에게 나누어 준다. 그리고 만약 남편이 결혼사례금을 지불하고도 재산이 남았다면 모든 아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

몇몇 사모에드 민족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에게 얼굴 양쪽에서 꼬여진 머리카락을 덧씌운다. 만약 사모에드 민족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만족 시키거나, 다른 아내보다 더 오래 지낸다면, 그녀는 감사의 표시로 남편의 머리를 여성의 머리처럼 얼굴 양쪽에 머리를 뺏아주거나 머리에 물고기 또는 사슴의 기름을 바른다.

남편이 사냥으로 들새를 포획하였다면 아내들 사이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데, 아이가 많은 아내에게는 좀 더 많이 나누어 준다. 남편은 순번대로 아내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밤을 지낸다. 숲속에 사는 통구스 민족은 사냥여행에서 항상 아내와 함께 하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만약 남편에게 2명의 아내가 있다면 첫날에는 나이 많은 아내와 밤을 같이 지내고 다음날엔 나이가 적은 아내와 점심식사를 한다음 저녁은 또다시 나이 많은 아내와 같이 한다. 그리고 또 다시 나이 적은 아내를 방문하여 밤을 같이 지낸다.

각각의 아내는 남편을 환대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남편은 비록 적게 먹었더라도 밤을 같이 보내는 아내와의 저녁 식사를 배불리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내들간의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몽고민족, 부랴트 민족, 야쿠트 민족들은 가축 사육 때문에 아내들은 서로 가까이 살 수 없다. 그리고 아내들은 흔히 하루정도 걸리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산다, 왜냐하면 남편은 한명의 아내와 함께 침대에서 일어나 약간의 아침밥을 먹고 출발하여 다른 아내를 방문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여행길이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는 저녁때가 되어서야 다른 아내의 집에 도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가는 도중 길에서 먹을 필요한 음식을 가지고 간다. 지금 만나라 가는 아내는 그의 일상적인 도착시간을 알기 때문에 저녁을 준비해 둔다. 이후 그는 다음날 아침까지 그녀와 같이 지낸다.

남자들은 이러한 생활 흐름에서, 아내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이 함께 운영하는 농경 및 목축 활동을 돌봐야 한다. 만약 남편이 자신의 친구나 지인을 방문하고자 할 때 또는 사냥을 가고자 할 때, 남편은 아내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내들의 환심을 사야만 한다. 그러나 모든 남편이 각각의 아내들과 미리 작별을 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의 여행으로 중단된 각각의 아내에 대한 방문 일정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러시아 북극권 도시연구: 우랄 북극권의 보르쿠타를 중심으로

박종관(경북대학교 연구교수)

보르쿠타는 러시아 북극권 영구동토지대인 툰드라에 위치해있다. 북위 67° 23'으로 북극권의 정의인 북위 66° 33'보다 다소 위쪽에 위치한다. 소비에트시대 네네츠 자치주에 속했던 보르쿠타는 1940년부터 코미 공화국의 행정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우랄산맥 최북단의 북극권에 위치해 있는 코미 공화국에서도 보르쿠타는 가장 위쪽에 위치해 북극해인 카라해와 근접해 있다.

최근 코미 공화국의 주지사 세르게이 가플리코프는 보르쿠타와 북극해의 카라하구까지 약 200km의 거리를 철도로 연결할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다.¹⁾ 이는 보르쿠타와 코미 공화국의 탄광지대 중심지의 연결로 북극의 카라해변까지인 카라하구와의 철로연결 사업이다. 향후 우랄 북극권의 자원지대와 북극항로의 연결로 새로운 북극항만의 개설을 의미한다. 본 프로젝트는 “카르스코무르(Карскомур)”로 북극권의 인프라구축 프로젝트다. 보르쿠타를 중심으로 우측엔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한티-만시스크 자치구, 좌측으로는 아르한겔스크 주, 아래로는 페름 변강주와 경계한다.

<그림 1> 코미 공화국의 보르쿠타



출처: <https://anshukov.livejournal.com/2029849.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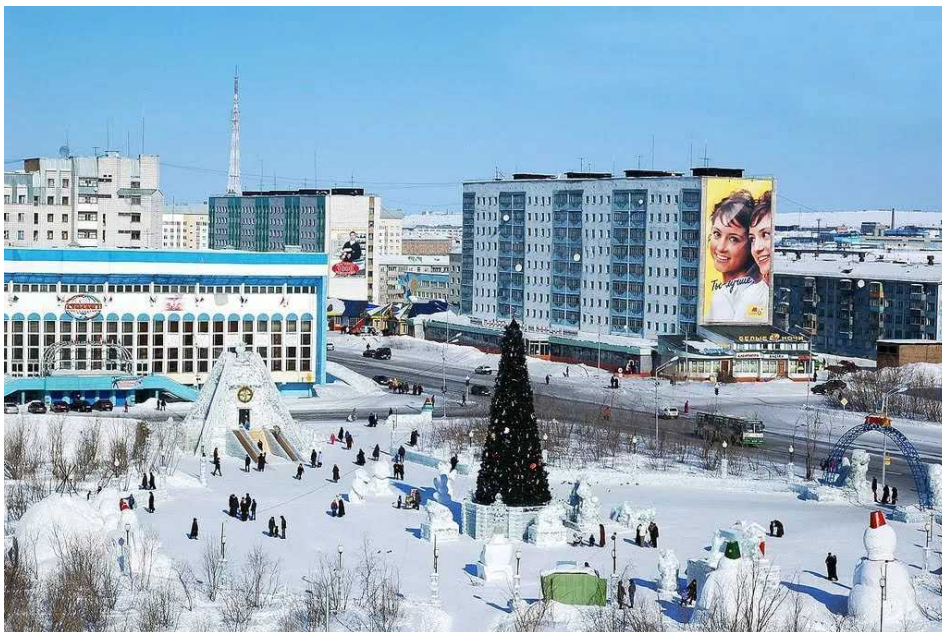
이렇듯 북극권에 위치에서 일까 보르쿠타에는 최근 도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

1) <https://thebarentsobserver.com/ru/arktika/2017/09/gubernator-komi-oboznachil-eshchyo-odnu-zheleznyuyu-dorogu-na-karte-rossiyskoy>

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도시에 큰 위협적 요인이 되었고 인구감소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보르쿠타의 인구학적 문제는 오늘날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 소비에트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젊은 연령층들은 우랄산맥의 북쪽 끝자락 지역의 혹한의 날씨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이러한 희망은 얼마 전 개통된 도로 연결로 인해 지역민들의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 즉 남쪽의 대도시들과의 이동이 훨씬 더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불과 2011년 까지만 해도 보르쿠타와 연결되는 자동차 도로는 없었다. 보르쿠타로 가기위해서는 비행기나 북극 철도를 사용한 두 가지 방법만이 유일했다. 인근지역에서 자동차를 동반하여 도시에 가기위한 유일한 방법은 보르쿠타에서 약 680km 떨어진 소스나고르스크 우흐타에서 철도차량에 자동차를 실은 뒤 도시로 하루 동안 이동하는 방법이 유일했었다. 하지만 2010년 야말반도 가스전 개발이 현실화 되면서 내륙과 연결되는 가스배관 설립과 동시에 배관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겨울도로인 짐니까(зимника)를 개통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한 북극과 북극권은 인류 전체의 미래 발전 및 생존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극권의 고위도지방의 해빙은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를 동반한 북극권 자원개발과 새로운 블루오션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북극권에서 생활해 왔던 소수민족에게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민족의 관습과 문화를 버리고 문명화된 대 도시로 이동을 추구하고 있다. 문제의 주요인은 북극권의 혹한의 날씨가 주원인이기는 하지만 지역의 자원개발에 따른 외부와의 접촉과 자연의 파괴에서부터의 요인 또한 무관하다 할 수 없다.

<그림 2> 보르쿠타 시 정경



출처: <http://tourweek.ru/foto/detail/145788/>

1. 보르쿠타란?

보르쿠타는 우랄산맥의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풍부한 석탄 매장지역이다. 소비에트 정부에 의해 193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되었다. 특히 1932년 탄광개발과 함께 스탈린에 지시로 인한 정치범수용소인 굴락이 세워지면서 1936년부터 현재의 도시형태가 건설되었다. 우랄산맥의 북단 구릉을 흐르는 보르쿠타 강을 끼고 있는 보르쿠타는 독일어 표현으로 “꿈이 풍부한 강”내지 “꿈의 도시”라 한다. 즉 이 도시는 꿈의 강에서부터 불리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르쿠타 시의 삶을 표현하자면 매우 거칠고 혹독한 생활공간이라 할 수 있다. 겨울이면 거친 눈보라가 잦아 긴 겨울과 추위의 연속으로 아북극권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평균 영하 20도, 최고 영하 52도를 기록한 적이 있다. 따라서 혹독한 날씨로 인해 겨울이면 인간의 정상적인 활동이 제한적이다. 땅이 얼지 않는 기간은 단지 연중 70일 미만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농업활동은 매우 제한적인데, 사실상 농작물 재배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인들이 주체가 되어 건설된 이 도시에는 러시아인 77.7%, 우크라이나인 9.1%, 타타르인 2.9%, 코미인 1.7%, 벨로루스인 1.5%, 추바시인 1.1%, 아제르바이잔인과 아르메니아인 각각 1% 및 기타로 구성되어있다. 2017년 기준 약 58,133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한때 10만 명 까지 큰 규모의 도시로 형성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혹독한 날씨로 인해 현재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큰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현재에도 전체 북극권의 5대 주요도시에 포함된다. 북극권을 대표하는 러시아의 북극관문도시인 무르만스크와 시베로모르스크를 시작으로 러시아 북극개발의 중심인 아르한겔스크, 노르웨이의 북극권 중심도시 트롬소, 니켈 생산으로 산업화된 러시아 북극의 노틸스크를 뒤따르는 규모의 큰 도시이다. 동유럽 산악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인간의 생활에 제한적인 북극 최고 극지방 영구동토 도시 보르쿠타에도 하늘의 은총이 있었던 듯하다. 이곳에 도시민들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산업인 기계 산업이 발달해 있는데, 특히 풍부한 지하자원인 석탄과 시멘트 공장이 크게 발달해 있다.

도시의 문화적 영역으로는 소비에트시기 스탈린 정부가 도시를 건설할 때부터 문화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었다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까 보르쿠타에는 코미 공화국에서 유일하게 인형극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서적이 보관되어 있는 도서관들, 문화센터들, 드라마 극장과 지역박물관이 위치해 있다. 이 외에도 보르쿠타 인근지역에는 다채롭고 아름다운 자연광경을 자랑하는 흥미로운 자연지대가 있다. 그 중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로는 대리석처럼 희고 반들거리는 협곡, 부레단과 할루메르-유(Буредан и Хальмер-Ю)폭포다.

<그림 3> 우랄 북극권 거점의 부레단 폭포(북위 68°43'41"N 65°21'8"E 위치)



출처: <http://zabroski.ru/polarny-ural/point/vburedan>

2. 굴락과 도시의 역사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르쿠타는 우랄산맥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전통적으로 풍부한 자원매장지대다. 특히 석탄매장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지역의 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제정러시아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정러시아 학자들은 도시 인근의 “불의 돌”을 발견했다고 하며, 바로 이곳에서 소비에트시대부터 석탄을 채굴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 소비에트정부는 보르쿠타에 실무인력을 파견하여 노동부락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1940년 유형으로 보낸 강제이주자를 코미 공화국 관할에 넘겼으며, 이렇게 하여 1943년 12월 26일부터 지금의 보르쿠타 소비에트연방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도시로 건설되었다. 도시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역 내 인구는 10년 동안 7천명에서 5만 명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1930년 말부터 1950년대 까지 보르쿠타에는 거대 소비에트 집단노동수용소인 보르쿠타 굴락(ГУЛАГ)이 세워졌다. 이곳에는 대부분 정치범들이 수감되었으며, 1951년에는 7만3천명이 수감되었다. 이후 집단노동수용소인 굴락이 개편되어 완화된 시기에도 보르쿠타에는 최고의 변방지역으로써 1980년까지 강제 유형이 지속되었다. 굴락 관리는 소비에트 정부 내무부 보안부의 산하소속이었다.

보르쿠타의 집단수용소 굴락은 격동의 역사를 갖고 있다. 1953년 7월 19일 거대 규모의 수용소 폭동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보르쿠타 폭동”이다. 보르쿠타 굴락 수감수들은 스탈린의 사후와 함께 특별사면을 기다렸다. 하지만 소수의 사면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수감수들은 파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파업이 평화로운 형태로 진행되었다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7월 26일 77명의 수감자들이 탈출을 시도하였고 결국엔 이 중 4명(2명 사망, 2명 부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의 결과로 7월 29일 1만 5천명의 수감자들이 노동을 거부했고, 31일부터 소비에트 내무부 보안부에서 시위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시위자들은 바리케이트 등을 치면서 강하게 저항했다. 8월 1일 신임 소장으로 임명된 제레비얀코(Деревянко А. А) 보르쿠타 굴락 소장은 발포령을 내렸고 이는 전차들을 앞세워 강경한 무력진압으로 진행되었다. 레오나르드 마르키조프에 따르면 8월 1일 42명 사망, 135명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관련하여 소설 “수용소 군도”, “암 병동”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러시아 소설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5만 6천명의 전체 수감자중 1만 8천명이 폭동에 참가했다고 한다. 폭동의 결과 약 200명이상의 인명피해로 소비에트 정부의 집단수용소의 대규모 폭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림 4> 보르쿠타 굴락



이 외에도 보르쿠타 지역에서 2회의 지하핵실험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실험은 1971년 7월 2일 도시로부터 20km 떨어진 곳의 지하 542미터에서 진행되었고 하노베이 기차역 인근지역이다. 이어서 1974년 8월 29일 보르쿠타 인근의 세이다 역 근처에서 583미터 깊이에서 진행되었다. 본 핵실험은 군사학적 실험이 아닌 상업적 실험이었다고 발표했다.

3. 북극철도건설

보르쿠타는 북극권 철도, 북극회랑이 연결된 도시다. 2차 세계대전 중 900일간 고립되어 전투를 한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대한 에너지 공급 거점이 되어 길이 1,200km의 코틀라스에서 보르쿠타까지 철도가 건설되었다.

북극철도 건설은 1870 - 1872년 동안 알렉산드로프에서 볼로그다까지 연결되면서 시작되었다. 1898년 볼로그다에서 아르한겔스크까지 협궤철도가 완성되었으며 1916년에 와서야 수입화물 수송이 가능한 표준궤로 교체했다. 체레포베츠-볼로그다-부이-갈린-스베차와 연결되

는 철로가 완성되었는데, 1899년에 북 드비나 강의 코트라스가 키로프(비야트쿠)를 지나는 지선이 페름과 연결되었다.

이렇듯 북극철도는 전 유럽소비에트의 도로망을 연결하는 중요 수송로였다. 1974년 기준 길이는 총 5599km였으며, 소비에트연방 전체의 4.2%를 담당했다. 북극철도 총괄지부는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되는 야로슬라프다. 이후 1959년 야로슬라프, 북극권, 페초르 등 크게 3개의 철도광역 영역으로 나누면서 현재의 철도경계지역을 형성했다,

<그림 5> 보르쿠타까지 연결된 러시아 유럽 및 북극권 철로현황

РАЗВИТИЕ ТРАНСПОРТНЫХ МОЩНОСТЕЙ ЕВРОПЕЙСКОЙ АРКТИКИ



출처: https://cdnimg.rg.ru/img/content/64/12/31/854_3.gif

4. 사회적 문제점

지역 통계에 따르면, 최근 소규모의 인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르쿠타의 사회문제 전문가 들은 지역의 발전에 그다지 긍정적인 상황이 아님을 지적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주민들은 고향을 버리고 좀 더 좋은 환경과 안정적인 경제적 삶의 공간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지역의 주민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대부분이 지역의 혹한의 날씨에 지쳐있다. 지역민들은 이유 없이 집을 버리고 있고, 이런 이유로 아파트들은 비어있으며, 불 꺼진 창문만 남아있다. 강하게 내리는 눈은 주민들의 집 주위와 생활공간을 덮고, 그들의 삶을 힘겹게 한다. 몸도 마음도 가장 춥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보르쿠타에는 아파트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그냥 삶의 공간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다.

<그림 6> 보르쿠타의 순록행사



출처: <https://yandex.ru/collections/card/5acfae6ec75bad1501d738ab/>

러시아 북극권의 주요도시들은 보르쿠타와 유사한 사회적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소비에트시기 말까지 러시아 서북권 북극관문의 항구도시인 무르만스크에는 최대 46만 명의 주민이 살았다. 하지만 2018년 현재 약 30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니켈 공장과 함께 산업화 되어 한때 경제적 부를 자랑하던 북극권 도시인 노릴스크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러시아 광물자원산업에 발달에 힘입어 러시아 경제의 높은 GDP를 담당하던 노릴스크의 인구는 2006년을 정점으로 20만3천명이었다. 하지만 2017년 최근 들어 17만 8천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들은 날씨가 따뜻한 남쪽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있고, 대부분 남쪽의 크라스노야르스크를 중심으로 하카시아 및 알타이지역으로 삶을 터전을 찾아 떠나고 있다. 이렇듯 보르쿠타 또한 매년 3천여 명의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으며 1989년에는 11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했음을 감안하여 2018년 기준 5만 8천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인구만 남아있다. 참고로 현재의 인구는 지난 1950년대 도시를 처음 세울 때의 인구와 비슷한 숫자다.

6. 보르쿠타 산업

보르쿠타의 산업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도시가 형성될 때부터 세워진 탄광기업 “보르쿠타우골”에서 일하고 있다. 2017년 노동 인구는 약 2만6천명인데 문제는 노동인구 보다 비노동인구인 연금생활자가 더 많아 노후화 된 사회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연금수령자는 총 노동인구의 50%를 초과한 2만 8천여 명에 육박한다. 노동력은 주로 탄광기업에서 집중되어 있으며 노동인구는 6천명이 조금 넘는데 2018년 초 기준으로 6704명이 탄광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통계에 따르면, 앞서 지적한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발생으로

2018년 말경 약 6292명까지 노동인구가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르쿠타 주민 고용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미취업 인구는 1,45%전체 도시에 660명이 무직으로 등록되었다.

7. 글을 맺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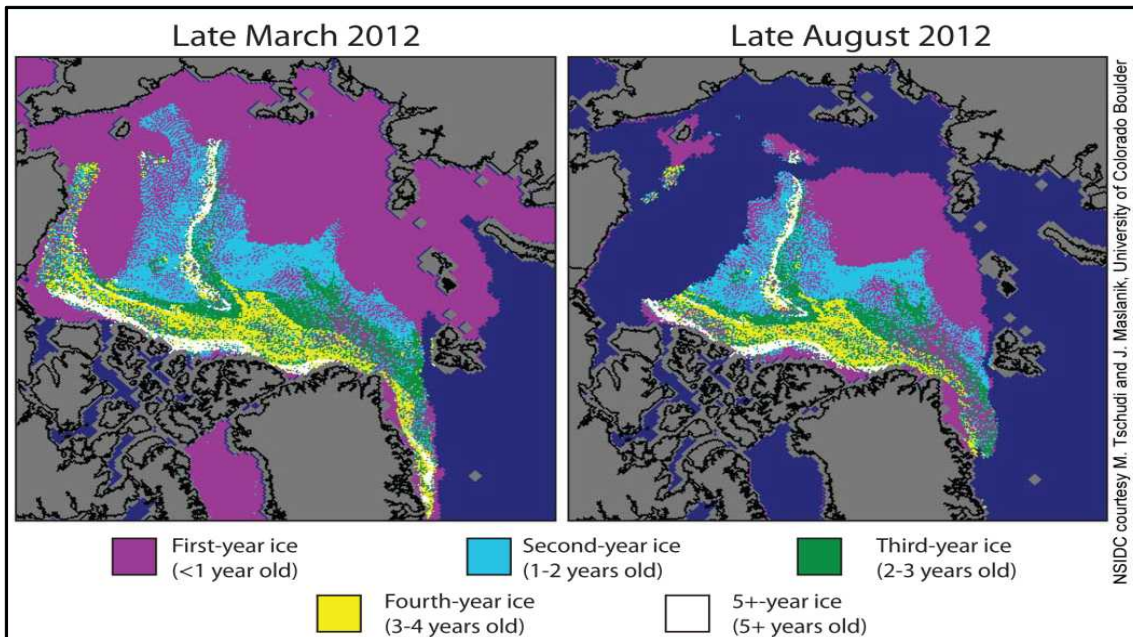
21세기 들어 북극과 북극권은 러시아뿐만이 아닌 전 지구적 차원에서 중요성이 점점 더 고취되고 있다. 북극권 국가 중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극을 활용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특히 거대한 양의 자원이 러시아 북극권에 매장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러시아로서는 이의 활용으로 경제적 이득에 대한 고도의 계산법이 추진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북극권의 자원개발과 동시에 자국의 영토를 지나는 북극항로개척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데, 최근 들어 러시아는 북극권의 철로망을 확장하는 등 내륙과의 물류교통연계망을 확장하고 있다. 북극의 자원은 북극항로를 통할 뿐만이 아니라 내륙과의 연결 또한 중요성이 크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러시아는 문화, 교통, 물류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극권 도시 개발에 인프라구축 투자 확대를 넓혀야 할 것이다. 북극권 개발의 최우선 과제는 풍부한 인력의 확보다.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북극의 자원 및 항로개발은 우수한 인적 재산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북극권 도시들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인프라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러시아 북극권은 항만거점도시, 자원개발도시들이 많다. 이런 관점에서 우랄 북극권의 보르쿠타는 전통적인 자원지대이며 동서남북을 연결로 북쪽과 시베리아횡단철도로 연결되는 내륙과의 철로 연결 중심지로 다시 재조명될 수 있음을 배재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극권 중요자원도시인 보르쿠타의 전체적인 가능성과 문제점을 검토한 글이며,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우랄북극 지역의 자원현황, 자원개발 및 철로교통망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북극권 에너지자원개발과 한·러 협력방안

예병환(대구대학교 강사)

I. 서론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북극보다 더 뚜렷한 곳은 없다. 1978년 이후로 북극 해빙의 1/4이 사라졌으며, 얼음이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녹고 있기 때문에 2011년의 빙하 수치(ice levels)는 기록된 것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¹⁾



이와 같은 북극의 변화는 지구온난화와 북극해의 해빙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면서 점증적으로 인간의 북극 접근, 자원개발과 북극항로의 이용 가능성의 증대를 도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특히 북극해 연안의 방대한 양의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용이해졌고,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2008년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매장량과 현재의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접근 가능한 매장량을 계산한 조사 결과, 세계 탄화수소 자원의 25%가 북극해의 얼음 밑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은 북극 자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러시아 대륙붕(북극해 연안)의 잠재적 탄화수소 자원의 예비 추정치는 900억 톤의 석탄량

1)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 "Arctic Sea Ice News and Analysis", August 3, 2011, <http://nsidc.org/arcticseaicenews/> (검색일 2011.7.15.)

(coal equivalent)이며, 이 중 60톤은 바렌츠해와 카라해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 2009년 추진된 ‘러시아 연방 국가안보전략 2020년까지’는 2020년까지 러시아의 북극지방을 러시아의 ‘최고 전략적 자원기지’로서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북극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을 분명하게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북극해의 석유와 가스 개발을 러시아 경제와 국가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으로 인식한다.

II. 러시아의 시베리아-북극권 에너지자원 개발현황

북극권 북쪽의 모든 지역을 탐험한 미국 지질조사국(USGS) 보고서는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북극권 자원평가(CARA, Circum-Arctic Resource Appraisal)를 실시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자원평가(CARA)는 석유자원의 대부분이 5개 지역(북극 알래스카 Arctic Alaska, 아메라시아 해분 Amerasia Basin, 동그린란드단층 해분 East Greenland Rift Basins, 동바렌츠 해분 East Barents Basin 및 서 그린란드-동 캐나다 West Greenland-East Canada)에서 발견되었고, 발견되지 않은 가스의 70% 이상이 3개 지역(서시베리아 분지, 동바렌츠해분 및 북극 알래스카)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의 80%가 연안지역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²⁾

석유 및 가스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한 러시아의 북극해 대륙붕 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³⁾

첫째, 러시아의 북극해 대륙붕 지역은 전통 및 비전통(셰일, Shale Gas) 석유/가스의 최대 잠재적 매장지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미래 세계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가능한 지역이다.

둘째, 러시아 북극해 대륙붕 지역은 6개 북극권 국가들 중 최대의 잠재적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한적인 G&G(geological and geophysical) 자료 및 부족한 정보는 미래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셋째, 러시아 북극해 대륙붕 지역의 자원개발은 러시아 석유/가스의 시장잠재력(market potential), 즉 수요, 생산일정과 생산량, 수송경로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필요로 한다.

넷째, 러시아는 이 지역의 자원개발을 위해 투자력, 기술적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국제적 파트너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노력하지만, 러시아의 HSE(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규정 준수는 필수적이다.

러시아의 북극해 대륙붕 지역은 석유 및 가스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극권 국가 중 단연 최대(해안선, 대륙붕, EEZ, 북극권 인구규모 등) 이해당사국이다. 북극해의 절반 정도에 대한 영토권을 확보하고 있다. 러시아 대륙붕(북극해 연안)의 잠재적 탄화수소 자원의 예비 추정치는 900억 톤 석탄량(coal equivalent)이며, 이 중 600억 톤은 바렌츠해와 카라해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거의 200만 여명의 북극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자원 산

2) US Geological Survey, "Circum-Arctic," 2008, p. 3.

3) A. Zolotukin & V. Gavrilov, (2011), "Russian Arctic Petroleum Resources, Oil and Gas Science and Technology" *Rev IFP Energies nouvelles*, Vol. 66, No. 6. pp. 899-910.

업과 공해로의 접근의 변경지역이자 핵심지역이다. .

<그림 1> 북극권의 석유 가스 활동



출처: Andreas Østhagen & Clare Richardson-Barlow, “Arctic Petroleum: Alask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Frameworks(working title)” CSIS Energy program. Version: October 2011.
<http://www.alternativprosjektet.no/wp-content/uploads/2012/01/Arctic-Oil-and-Gas-Development.pdf> p. 16.

<표 1> 북극권의 석유 가스 활동

국가	번호	유전/가스전	상태
노르웨이	1	스노비트(Snøhvit)	생산 중
	2	골리앗(Goliat)	개발 중
	3	슈크루가드(Skrugard)	개발 중
	4	노르바르그(Norvarg)	개발 중
	5	로포텐/베스테렐렌(Lofoten/Vesterålen)	보류/잠재적
러시아	6	슈톡만(Shtokman)	개발 중
	7	카라 해(Kara Sea)	보류/잠재적
	8	쁘리라즐롬노예 돌긴스코예(Prirazlomnoye and Dolginskoye)	개발 중
	9	네네츠(Nenets)	생산 중
	10	야말(Yamal)	생산 중
	11	야말(Yamal)	생산 중
그린란드 (덴마크)	12	살리잇(Salliit, Uummannarsuaq, Saqqamiut and Kingittoq)	개발 중
	13	레이디 프랭클린(Lady Franklin) 아타믹(Atammik)	개발 중
	14	에쿠아(Eqqua), 잉고라크(Ingoraq), 시국(Sigguk), 나파리아크(Napariaq) 피투(Pitu)	개발 중
캐나다	15	베핀 만(Baffin Bay)	보류/잠재적
	16	아르틱 아일랜드(Arctic Islands)	개발 중
	17	버포트 해(Beaufort Sea)	개발 중
	18	맥킨지 델타(Mackenzie Delta)	생산 중
미국	19	버포트 해(Beaufort Sea)	개발 중
	20	북극야생동물보호구역(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보류/잠재적
	21	프루드호예 만(Prudhoe Bay)	생산 중
	22	노스 슬로프(North Slope)	생산 중
	23	국립석유보호구역(National Petroleum Reserve)	개발 중
	24	추치해(Chukchi Sea)	개발 중

출처: Andreas Østhagen & Clare Richardson-Barlow, "Arctic Petroleum: Alask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Frameworks(working title)" CSIS Energy program. Version: October 2011.
<http://www.alternativprosjektet.no/wp-content/uploads/2012/01/Arctic-Oil-and-Gas-Development.pdf> p. 17.

러시아의 에너지자원은 석유 930억톤, 가스는 전체 매장량이 236조 1,000억m³ 인데, 이 중 160조 3,000억m³은 육지에, 75조 8,000억m³은 대륙붕에 매장되어 있다. 이들 자원은 러시아의 37개 지자체에 분포되어 매장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지하자원은 서부 시베리아, 우랄 불가

지역, 북서지역, 극동러시아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다.

<표 2> 러시아의 지역별 석유가스 매장 및 생산현황

석유			
구분	지역명	매장(십억톤)	생산(백만톤)
극동러시아	사할린주	1.8(추정)	14.9(2007)
	사하공화국	2.4(추정)	0.3(2007)
	캅차트카 지방	1.4(추정)	N/A
	하바로브스크 지방	0.5(확인)	N/A
	소계	18(추정)	최대 16
우랄	한트 만시츠키 자치구	20	280(2007)
	야말로 네네츠키 자치구	0.292(가채)	36(2006)
	소계	38(추정)	최대 320
프리볼췌스키 (볼가)	페름 지방	0.36(추정)	10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	0.385(추정)	11(2007)
	타타르스탄 공화국	0.5(추정)	28(2003)
	사마라주	0.3(확인)	11
	오렌부르그주	0.466(가채)	14
	우두무르트 공화국	1.5(추정)	8~10
	소계	0.38(추정)	4(추정)
시베리아	툼스크주	0.514(확인)	12
	웁스크주	2.3(추정)	10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0.3(가채)	10
	노보시비르스크주	0.8(추정)	8(가채)
	미르쿠츠크주	27(추정 Taimyr)	2
	소계	1.2(Evenki)	2.4
	소계	0.070(가채)	0.85
북서지방	코미 공화국	0.52(추정)	0.85
	네네츠크 자치구	0.242(추정)	12.8(가채)
	소계	2.18	10.3(2004)
	소계	1.225	13.5(2007)
해안 대륙붕 러시아	러시아 전체 대륙붕	2.4(추정)	최대 5(추정)
	전체	13.5(추정)	최대 30
러시아	전체	최대 93(추정)	491(2007)

가스			
구분	지역명	매장(십억m³)	생산(백만m³)
극동러시아	사할린주	2000(추정)	6400(2007)
	사하공화국	9400(추정)	1605.9(2007)
	캅차트카 지방	800(추정)	N/A
	하바로브스크 지방	5	N/A
	소계	최대 20000(추정)	최대 8000
우랄	한트 만시츠키 자치구	N/A	29500(2007)
	야말로 네네츠키 자치구	10400	570000(2006)
	소계	43000(추정)	최대 600000
프리볼췌스키(볼가)	페름 지방	N/A	750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	300(추정)	394(2007)
	타타르스탄 공화국	32	740
	사마라주	24(추정)	N/A
	오렌부르그주	9945	25000
	우두무르트 공화국	N/A	N/A
	소계	N/A	N/A
시베리아	툼스크주	1500(추정)	4000
	웁스크주	N/A	N/A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23000	N/A
	노보시비르스크주	110(추정)	N/A
	미르쿠츠크주	1200	N/A
	소계	37800	N/A
	소계	1700	2800
북서지역	코미 공화국	470	114.5
	네네츠크 자치구	1100(추정)	최대 3000(추정)
	소계	최대 3000(추정)	최대 3000
해안 대륙붕 러시아	러시아 전체 대륙붕	75800	N/A
	전체	236100	650760(2007)

자료출처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23CDQASYGZAR76kehiXiYIsSB9b31fj_zcVP0A_YLc0IhyR0dFAHPA0Kw!/delta/base64xml/L3dJdyEvd0ZNQUFzQUMvNElVRS82X0VfOE0z?1=1&workdist=read&id=2044008

시베리아의 석유개발 유망지역은 톰스크, 옴스크, 노보시비르스크주이고, 석유가스 유망지역은 이르쿠츠크주,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에벤킨스크 자치구이며, 가스 개발 유망지역은 타이르스크 자치구로 나타나고 있다. 추정 총 매장량은 석유 128억 톤, 가스 37조8,000억m³, 액화가스 2조3,000억 톤 이며, 확인된 매장량은 석유 16억 톤, 가스는 6조1000억m³인데 석유 자원의 13%, 가스 매장의 11% 정도가 확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요 매장지를 살펴보면, 톰스크주는 매장량이 석유가 23억 톤, 가스가 1조 5,000억m³로 추정되어 지고 있으며, 가채 석유매장량은 5억 1,440만 톤으로 이중 100개 의 유전 및 가스전에서 현재 연간 1,200만 톤의 석유와 40억m³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옴스크주에는 약 8억 톤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3억 톤이 채굴 가능한 자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의 가채 석유 매장량은 80억 톤, 가스는 23조m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주요 매장지는 반코르스크에 석유가스전, 타남스키 가스전, 볼쉐헤트스키, 유루브첸코-토홈스키, 소빈스크-테테린스키, 니제네안가르스키 석유가스전 등이 있으나, 현재 노릴스키 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한 타남스키 가스전만이 개발돼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에벤킨스키 자치구에는 5개의 매장지가 발견되었으며, 확인된 석유 매장은 전체 매장량의 20%인 12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보시비르스크 지방의 추정 석유 매장량은 5억 2,000만 톤, 가스는 1,100억m³이며, 현재 북부 지방의 톰스크주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9개 매장지역 중에서 2곳에서만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르쿠츠크주에서는 11개의 지역에서 석유 2억 4,200만 톤, 가스 1조 2,000억m³, 액화가스 5,200만 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석유는 베르흐네촌스크에 83.4% 가스는 코브틴스크에 74.8%가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다.

우랄지역은 러시아 총 석유매장량인 930억 톤 의 40%에 달하는 380억 톤, 가스매장량의 약 20%인 43조m³가 매장돼 있으며, 야말로 네네츠크 및 한트 만시스크 자치구에는 300여 개의 석유 및 가스전이 분포되어 서부 시베리아 지역으로 전세계의 석유자원 매장기준으로 페르시아만에 이어 두번째로 큰 지역이다. 주요 매장지역인 한트 만시스크 자치구의 석유 매장량은 200억 톤이며, 이는 러시아 전체 가채 매장량의 57%에 달하며 2007년 기준 연간 석유생산량은 2억 8,000만 톤으로 전년대비 2% 증가한 생산을 나타내고 있다. 야말 반도는 서부 시베리아의 가장 유망한 유전지대인데 2억 9,100만 톤의 석유와 26개 가스 매장지가 발견되었고 10조m³의 가스, 2억 5,000만 톤의 액화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외에도 야말로 네네츠크 자치구에 3,600만 톤의 석유와 5,700억m³의 가스가 생산되고 있다.

시베리아 극동지역에는 러시아 전체 석유매장의 20%인 180억 톤, 가스 250억m³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사하공화국 남부와 오호츠크해 대륙붕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다. 사할린주는 극동지역 중에서 유전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인데, 유전 11개, 가스전 17개가 개발되어 있으며, 전체 에너지자원 매장량은 석유 18억 톤, 가스 2조m³로 추정되어 진다. 이 지역의 에너지 채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에는 전년대비 2.4배 증가한 1,490만 톤의 석유가 채굴되었다. 사하공화국에서는 32개의 석유 및 가스전이 발견되었으며, 추정 매장량은 석유 24억 톤, 가스 9조4000억m³에 달한다. 이 외에도 캄차트카 지방에 14억 톤, 하바로브스크 지방에 5억 톤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

1. 슈톡만(Shtokman): 유전과 가스전

슈톡만 가스전은 1988년 발견되었고,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전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 필드는 북극해에서 600km 떨어진 어려운 연안 조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 및 작동 장비가 필요했고 따라서 개발과정이 오래 걸렸다. 이 지역의 석유자원 개발을 위한 러시아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국제적인 다국적기업들이 수년간 경쟁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07년 프랑스와 노르웨이의 에너지 회사인 Total과 Statoil이 필드의 소유권자인 러시아 국영가스기업인 Gazprom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함께 가스전 개발의 첫 번째 단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Shtokman Development AG를 설립하여 슈톡만유전 개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대도시 무르만스크에 인접한 작은 해안마을인 테리베르카(Teriberka)가 새로운 LNG플랜트 위치로 선택되고, 무르만스크 항은 주요 선적항 역할을 할 거점항구로의 개발이 추진되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는 최소한 12척의 아이스 클래스 LNG 탱커가 필요하다. 가스전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는 파이프라인 생산을 위해 2016년까지, LNG를 위해 2017년까지 연기되었다. 슈톡만 필드는 북극 가스 개발을 위한 기함으로 선전되어, 엔지니어링 분야에 도전하고 동시에 이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입증하고 있다.

2. 네네츠(Nenets) - 티만 페초라 분지: 유전과 가스전

최근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유전 및 가스전이 발견됨에 따라 네네츠 지역의 티만 페초라(Timan Pechora) 분지가 러시아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티만 페초라 분지에만 24개의 생산중인 가스전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132BCF(Billion Cubic Feet, 10억 입방피트)의 확인된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Yuzhnoe-Khykchuyu라는 또 다른 대형 유전은 2008년에 가동을 시작했으며 LUKoil과 ConocoPhillips의 합작 프로젝트이다. LUKoil이 소유한 바렌츠해에 위치한 Varandey 근해 석유 터미널은 새로운 티만 페초라 유전들에서 나오는 원유의 수송을 위한 주요 모드가 될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유전은 Kharyaga 유전이다. Kharyaga는 1999년부터 Total, Statoil, Zarubezhneft 및 Nenets Oil Company가 석유를 생산해 오고 있다. 또한 CH-Invest와 EvroSeverNeft는 Pechora LNG라고 불리는 Indiga의 네네츠 연안에 LNG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3. 야말(Yamal) 반도: 유전과 가스전

러시아 북극권에서 가장 번성한 지역은 수많은 석유 및 가스전이 있는 야말 반도이다. 러시아의 총 가스 생산량의 약 90%가 이 지역 가스전에서 생산되고 있다. 야말 반도의 가스 자원에 대한 확인된 추정치는 16-22bcm(billion cubic meter, 10억 입방미터)이다.⁴⁾ 발견된 천연가스 매장량은 야말의 자원의 대부분과 러시아 전체 천연가스 자원의 90%를 차지하고 있으

4) "Yamal Megaproject," Gazprom, June 2011, <http://www.gazprom.com/production/projects/mega-yamal/> (검색일 2011.8.30.)

며 총 26개의 가스전이 발견되었다.

<그림 3> 야말반도(우측상단)



우렝고이(Urengoy), 얀부르그(Yamburg) 및 자뻬리야르노예(Zapolyarnoye) 가스전은 1978년, 1986년 및 2001년 이후 가스를 생산해 왔으며, 2012년에 가스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바넨코보(Bovanenkovo) 가스의 개발과 함께 이들 가스전들은 러시아의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의 중추를 이룬다. 이들 가스전으로부터 공급을 유지하고 증가시키기 위해 가즈프롬은 2008년에 1,100km 길이의 보바넨코보-우흐타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착수했다. 파이프라인은 2012년에 작동할 예정이었다. 파이프라인은 야말과 슈톡만을 발트해를 경유하여 독일에 직접 연결하는 노르드-스트림(Nord-Stream)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 러시아 중부의 토르조크 (Torzhok)와 연결될 대규모 연결(총 연장 2,400km)의 시작점이다.

4. 페초라해(Pechora Sea): 뿌리라즐롬노예 유전과 들긴스코예 유전

페초라해의 뿌리라즐롬노예(Prirazlomnoye) 유전은 1989년에 발견되었다. 이 유전은 해수면 아래 20-30미터(65-100 피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추정되는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7,450만 톤이다. Shtokman 유전과 마찬가지로, 이 유전의 생산은 현대 기술 및 북극 해양 환경에서의

운영 가능성에 대한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연중 약 2/3의 기간에 바다는 얼음으로 덮여있다. 이것은 극한의 기온이나 부빙을 견딜 수 있는 시추 플랫폼을 필요로 한다. Severodvinsk에 있는 러시아 최대 조선회사인 Sevmash가 생산한 오일 플랫폼은 이러한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순 무게와 크기(sheer weight and size)를 사용한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러시아 북극에서의 최초 연안 석유생산이 될 것이다. Shtokman 필드와 달리, 이 플랫폼은 유전에 기반을 두고 일년 내내 생산이 예상된다.

페초라해의 또 다른 연안(offshore) 유전은 Gazprom이 전적으로 소유한 돌긴스코예(Dolginskoye) 유전이며, 검증된 매장량이 2억 3천 5백만 톤으로 뿌리라즐롬노예(Prirazlomnoye)의 3배에 달한다.

5. 기타 지역들 - 남 카라해: 가스전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마지막 개발 지역은 Yamal 지역 연안 바로 외곽에 위치한 South Kara Sea이다. USGS에 따르면, 이 지역은 발견되지 않은 북극 가스의 거의 39%를 포함한 자원 측면에서 가장 유망한 지역 중 하나이다. 여기는 수심이 더 깊고 대부분 얼음이 덮여있어 새로운 가스추출 방법을 필요로 한다. 러시아 정부가 2009년 Rosneft에 개발구역(blocks)을 허가함으로써 Rosneft와 BP 사이의 북극 탐사 거래를 촉진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석유 생산은 2030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III. 한·러 에너지 개발 협력방안

러시아 북극권 에너지 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방안은 조선(아이스 클래스급 또는 쇠빙 유조선)과 북방향로 운송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북극항로와 관련하여, 북극항로(北極航路)가 새로운 ‘해상(海上) 실크로드’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러시아 북방향로와 캐나다 북서항로를 포함하는 북극항로는 해상수송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더불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⁵⁾ 그러나 한국정부는 북극이 가지는 잠재적 가능성을 놓치지 않았고 지속적인 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는 북극항로와 북극해 개발 참여를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고,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3년 2월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태평양과 북극항로를 통해 연계하는 신(新)해상물류계획을 발표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2013년 9~10월 북극항로 시험 운항에 성공했고, 2014년 여름에는 첫 상업 운항을 추진했다.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 또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며 북극, 에너지, 물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항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개발원 황진희 박사는 “북극항로의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안

5) 조선일보 [이슈 포커스] “북극항로 가로막는 네 개의 ‘암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20/2014052004380.html (검색일: 2018.02.05.)

전성·경제성 측면에서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면서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러시아 북극에서 진행중인 3개의 LNG 플랜트 개발계획과 2020년까지 30개의 새로운 아이스 클래스 유조선 수요는 조선과 관련하여 한국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 놓았다.

2017년 9월 5일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소브콤플로트(Sovcomflot, SCF)로부터 쇄빙유조선 1척을 추가로 수주하며 지금까지 소브콤플로트로부터만 7척의 극지 운항용 유조선을 수주하게 됐다. 9월 5일 스플래시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소브콤플로트로부터 4만 2000DWT급 쇄빙기능이 적용된 셔틀탱커 1척을 수주했다. 구체적인 선박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지 업계에서는 선박가격이 1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오는 2019년 10월 인도될 예정이다. 소브콤플로트는 2016년 8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동형선 3척, 즉 쇄빙유조선 첫 호선인 ‘슈투르만 알바노프’(Shturman Albanov)호를 시작으로 ‘슈투르만 말리긴’(Shturman Malygin)호, ‘슈투르만 오프친’(Shturman Ovtsyn)호를 인도받은 후, 올해에 또 쇄빙유조선 1척을 추가로 발주했다. 11.5MW급 아지무스 스러스터(Azimuth Thruster) 2기가 장착된 이들 선박은 첫 번째 충격으로 최대 1.8m, 이어지는 선수의 충격으로 1.4m의 얼음을 깨고 항해할 수 있는 ‘아크7(Arc7)’ 쇄빙기술이 적용된 선박이다.

용선사인 가스프롬 네프트(Gazprom Neft)는 야말반도에 위치한 ‘노비 포트’(Novy Port, Novoportovskoye)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이들 선박에 선적해 얼음이 얼지 않는 부동항인 무르만스크(Murmansk)에 위치한 원유저장용 플랫폼(선박)인 30만259DWT급 ‘움바’(Umba, 2001년 건조)호에 하역하게 된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지금까지 러시아 소브콤플로트로부터 쇄빙유조선 7척, 러시아에서만 총 10척의 쇄빙유조선을 수주하게 됐다.

종합하면, 러시아 북극해 대륙붕의 자원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 몇 가지 요인, 즉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유지되는 국제유가, 과잉생산과 낮은 가격 수준에 처해 있는 LNG 시장, 2014년 러시아의 크림 합병 이후 미국과 EU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러시아의 북극지방을 러시아의 ‘최고 전략적 자원기지’로서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2020년까지 러시아 연방 국가안보전략』) 북극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을 분명하게 밝힌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북극해의 석유와 가스 개발을 러시아 경제와 국가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 북극의 석유 및 가스 개발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불확실하지만, 그것은 또한 러시아 경제 및 안보 정책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더 큰 맥락에서 어쨌든 러시아는 북극의 석유 및 가스 개발을 계속 재정립해 나갈 것이다.

한편, 북극의 LNG와 관련하여, 2020년까지 30개의 새로운 아이스 클래스 쇄빙 유조선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러시아 최대 민간 유조선 회사인 Sovcomflot의 추가 쇄빙선박(유조선) 주문에 대한 한국의 관심도 커졌다. 이렇게 되면, 내부 및 장거리 운송량이 크게 늘어나고, 북방향로의 중요성 또한 그만큼 커진다. 북방향로의 역할이 커지면, 한국의 북방향로를 이용한 물류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네네츠 민중봉기 ‘만달라다’

김정훈(배재대학교 러시아·중앙아시아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소비에트 정권의 형성과 강화 기간 동안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내의 여러 소수민족들은 강제적인 집단화, 농산물 징발, 집단농장(колхоз) 설립 등에 반대하여 봉기를 일으켰다. 소비에트 권력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세력들은 체포되었으며, 멀리 떨어져 있는 수용소로 호송되었다. 그러나 소련에 반대하여 격렬하게 봉기한 소수민족 중 유배 보낼 곳이 없었던 한 민족이 있었다. 바로 네네츠인이었다. 그들은 사실 상 지구의 최극단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정권 수립 및 강화 기간의 정치적, 행정적 변화 속에서 러시아 북방의 소수 민족인 네네츠인들은 근대화 과정으로 유입되었다. 그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 정책 속에서 네네츠인의 공동체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해야만 했다.¹⁾

소비에트 시기 네네츠인들의 대표적 거주지역이었던 야말과 우랄지역에서 수차례의 봉기가 발생했다. 러시아연방 북부지역을 연구한 저명한 인류학자인 A.V. Golovnev는 장로(원로)들과 소련 당국과의 정확한 대결 횟수를 규정짓기가 어렵다고 주장(2, 3 또는 4 번의 대규모 반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의 일부 노인들 역시 항의 소요가 잠시 진정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완전하게 멈춘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²⁾. 이 시기에 발발한 네네츠인들의 봉기를 ‘만달라다(Мандалада)’라고 칭한다. 일반적으로 ‘만달라다’는 소비에트 당국의 행동에 맞서 우랄의 북극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네네츠의 시위 명칭으로 네네츠어로 ‘군대의 집회’ 또는 ‘무장한 사람들이 원안에 모여 있음’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네츠 전통에 따른 ‘만달라다’의 개념은 군사 공동체와 그들의 행동을 의미한다. 그들의 평화적인 모임인 ‘말리요다바(мальёдава)’와 달리 ‘만달라다’는 바로 무장한 사람들의 모임을 뜻한다.

II. 두 차례의 ‘만달라다’

1. 첫 번째 ‘만달라다’, 1934년:

소비에트 정권에 의한 근대화 과정은 순록 및 어업을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을 영위

* 본 논문은 2018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1) 최우익 편저, 『러시아연방주체 개관 시리즈: 네네츠 자치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2017, 도서출판 참글), pp. 31-32.

2) A.B Головнев, «Священная война» ненцев с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ью: что это было. <http://russian7.ru/post/svyashhennaya-voyna-nencev-s-sovetskoy/>

해오던 네네츠인들의 삶의 방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네네츠 내부에서는 소비에트 정부와 민족구 지도부에 대한 저항 분위기가 축적되고 고조되었다.

1932년-1933년 사이에 샤먼과 꼴락(кулак, 부유한 순록 목축업자)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의 소규모 그룹들이 모피와 반가공품 형태의 순록 가죽 징발을 요구하는 소비에트 당국에 반대하는 분위기와 정서를 네네츠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1932년 3월 11일 3,500마리의 순록을 보유한 야말 지역의 꼴락인 마이 솔린테르(Май Солинтэр)는 ‘칸 협동조합(Ханский кооператив)’측의 전권위원인 비따제프(Витязев)와 아누프리에프(Ануфриев)에게 가난한 사람들과 맺은 순록공출에 관련된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마이 솔린테르 자신과 자신의 순록의 운명을 결정할 그 어떤 권리도 없다고 강변하며 최초의 불만을 표출했다: “당신들에게 여러 형태의 수많은 전권대표(러시아인을 포함한 민족구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했으며, 당신들은 이후에도 결코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러시아인 없이 살 수 있다. 나에게는 현재 순록이 있으며, 미래에도 그 무리들은 나에게 있을 것이다(Разных уполномоченных много было, они ничего не добились, вы и потом не добьетесь. Я могу жить без русских - у меня есть олени, сыт буду)”. 그 해 4월 24일 솔린테르는 그에게 고용된 농장 노동자 착취 권으로 법원에서의 소환명령이 있었으나 이를 거부했다. 그는 문서전령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당신들의 법정과 소비에트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나에게는 나 자신의 법이 있다(Судей ваших и советскую власть не признаю, у меня свои законы)”. 일정 진행에 관한 네네츠인 로갈레프(Рогалев) 측으로부터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직후, 그는 칼을 들고 로갈레프를 공격했으나, 바로 무장해제 당했다³⁾. 그 후 마이 솔린테르는 인근의 천막으로부터 칼로 무장한 12명의 무리를 조직하는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 인접지역으로 전령을 보냈다.⁴⁾

이와 같은 분위기는 네네츠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기 시작했다.

1934년 소비에트 정권의 강경한 행동이 더욱 거세짐에 대한 반감 때문에 까짐(Казым) 강유역과 톨크(Тольк) 지역의 ‘전쟁’에 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며, 그 영향으로 인해 야말 지역에서의 대규모 저항운동이 펼쳐지게 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에트 공장의 봉쇄 또는 사보타주와 같은 피동적인 저항이 전개되기도 했다. 1934년 봄 툰드라 지역에서 야말과 우랄 북부 지역의 공장으로 수송되던 화물들이 순록 썰매로부터 강제로 내려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더 호전적인 전술들이 사용되기도 했다.

1934년 봄 야말 지역의 네네츠인들의 항의 운동은 기세를 확보해 나갔다. 네네츠인들의 항의의 물결은 하나의 운동 ‘만달라다’가 되어 더욱 거세져 갔다. ‘만달라다’의 참가자들은 야말 북부 지역에 인민법정(народный суд)을 설립하고, ‘지구행정위원회(окрик, окруж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의 부대표 노고와 간부회의 의원 젤레닌(Зеленин) 그리고 감독관 삼부르스키(Самбурский) 등의 참여하에 그룹 가입을 단호하게 거절한 ‘탐베이 인민위원회(Тамбейский

3) «Мандалада»: за что ненцы воевали против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http://24news.press/history/mandalada-za-cto-nency-voevali-protiv-sovetskoy-vlasti/full/>

4) Ibid.

нацсовет)’ 의장 삐비치 오카테뜨또(Пивичи Окатэтто)와 위원회 의원인 빈농 누미 뚜시드(Ну ми Тусид)에 대한 ‘인민재판’을 개최했다. 그들은 훌쩍 벗겨진 상태로 눈 위에서 굴러지고 폭행당한 후, 만달라다의 가담을 강요당했다.

이와 같은 최초의 ‘만달라다’ 운동은 1934년 겨울까지 지속되었다. 전국위원회의 위원들은 폭행과 사망의 공포에 떨며 자신들의 증명서를 넘겨주었으며, 시위 참가자들은 징벌을 목적으로 소비에트 정권을 위해 활동한 지도부 요원들을 양도하기를 요구했다. 실제로 1934년 12월 2일 꿀락집단에 위해 붕괴 위기에 처한 소련 내무부 인민위원회의 지구위원회 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야로(Яро) 호수 인근에서 개최된 네네츠인들의 회합에서 슈치에레첸스키 전국협의회(Шучьереченский нацсовет) 위원 일부는 지역대표에게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넘겨주었다. 여기에서 꿀락들은 뿌리우랄스키 집행위원회(РИК, район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 대표인 하판제예프(Хатанзеев), 내무부 인민위원회 통역인 나리치(Г. Наричи) 그리고 슈치에레첸스키 전국협의회 위원 삐날레이(О. Пиналей) 등의 재판 송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구위원회 부대의 수적 우위와 열성적인 활동으로 인해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만달라다’는 야말의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들을 봉쇄하여 그들과 지구 당국과의 관계를 중단시켜 나갔을 뿐 아니라, 여러 곳의 전국위원회들을 해산하기도 했다. 그 뿐 아니라 네네츠 시위대는 나딤(Надым) 강유역의 고립되거나 분리된 공장들을 파괴하거나, 공장 간부들과 지역 경찰들을 살해하기도 했다.

이들 네네츠 시위대의 실질적인 요구는 툰드라 지역으로부터 소비에트 권력의 철수였다: “러시아인들은 네네츠인들의 거주지역에서 철수하라, 우리에게는 공장이 필요 없으며, 우리의 꿀락과 샤면에게 투표권을 돌려주어라.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지 않을 것이며, 소비에트 권력과 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복종하지도 않을 것이다”.⁵⁾

12월 ‘만달라다’의 활약으로 인해 네이핀스끼(Нейтинский), 땀베이스끼(Тамбейский)와 띠우테이스끼(Тиутейский) 전국협의회(нацсовет) 등이 해체되었으며, 야말 북부 지역의 공장(세야힌스까야 공장 Сеяхинская фактория, 땀베이스까야 공장 Тамбейская фактория과 드로바노이만 공장 Мыс Дровяный фактория)들의 주요 북부 항해로를 통한 정부기관과의 통신도 차단되었다. 시길리에뜨프(С. Сигильетов)를 지도자로 하는 까짐 지역의 봉기 참여자들인 오스짜끄(остяк)인들의 무리는 나딤(Надым) 강 상류 지역의 공장을 약탈하고 범죄수사대(УГРО, угол овный розыск)의 전권대표 무라쉐프(Мурашев)와 경찰관 드미뜨리 라게이(Дмитрий Лагей) 그리고 협동조합의 지도자인 막심 아누프리에프(Максим Ануфриев)를 살해했다.

실질적으로 만달라다’는 북부 야말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그 결과 네이핀스끼 민족위원회(Нейтинский нацсовет) 소유 60 두, 땀베이스끼 민족위원회 120두 그리고 글라브세베로모르뿌띠(Главсевероморпуть) 630두를 강탈하고 분리시켰다. 이 가축의 무리들은 세르삐프(Серпиву)와 야쁘띠꼬프(Яптиков) 가문으로 분배되었다.

야말 지역의 가장 단순한 생산 연합체인 ‘나리따 엔게름(Нарыта Нгэрм, 러시아 표기: Красный Север, 위대한 북방)’와 다른 지역들도 ‘만달라다’에 의해 완전하게 탈취 당했다. 그 뿐 아

5) Ibid.

나라 나뉠 지역의 순록 국영농장 가축무리들은 꼴락의 가축들과 혼합되거나 단순한 무리의 양도 방법을 통해 배분되었다. 꼴호즈 ‘에다이 일레르(Едай Иллер, 러시아 표기: Новая Жизнь, 새로운 삶)의 절반가량의 순록무리가 손실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도처에서 순록들의 대량학살이 목격되기도 했다. 야말의 북부와 바이다라프 지역에서는 모피산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만달라다’는 동물의 조달을 금지했다.

1934년 ‘만달라다’의 지도자들은 소비에트 당국과 1년간의 협상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은 최후통첩을 보냈다⁶⁾:

– 제품 및 제조품 징발 제도 철폐(Отменить нормы отоваривания продуктами и промтоварами)

–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현금 구입(Покупать по потребности и на деньги)

– 꼴락과 빈농 차별 철폐: 우리 모두는 동일(Долой кулаков и бедняков — мы все одинаковы)

– 꼴락과 샤먼의 투표권 복권(Восстановить в правах голоса кулаков и шаманов)

– 소비에트와 그들의 선출자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복종하지도 않을 것: 새로운 소비에트도 선출하지도 않을 것(Не признаем советов и своих выборных, подчиняться им не будем; новые советы выбирать не будем)

– 공장도 필요 없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러시아인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 러시아인들의 철수(Не надо факторий, потому что стало много ездить русских; уберите русских)

– 소비에트 법을 반대하며, 그에 따르지 않을 것(Мы против советских законов и выполнять их не будем)

– 공장과 소비에트로부터 모든 네네츠인을 해방시킬 것(Выдать всех ненцев с факторий и из советов)

–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지 않을 것(Детей в школу отдавать не будем)

사실, 이러한 요구 사항의 이행은 소련 당국이 취한 모든 조치를 거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툰드라 지역에서 소비에트 권력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에 소비에트 당국은 적극적인 진압작전을 전개하게 된다. 결국 1934년 12월 말 항의 시위 진압 목적으로 소련 인민위원회 공산당 정치 정책국(ОГПУ, Объединён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поли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은 요원 100여 명을 파견하여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소비에트 정권의 무력진압에 의해 최초의 ‘만달라다’ 기세는 진정되었다.⁷⁾

2. 두 번째 ‘만달라다’, 1943년:

첫 번째 ‘만달라다’ 이후 10여년이 지나 제 2의 ‘만달라다’ 물결이 네네츠인들의 거주지역을

6) <https://ru.wikipedia.org/wiki/%D0%9C%D0%B0%D0%BD%D0%B4%D0%B0%D0%BB%D0%B0%D0%B4%D0%B0>

7) «Мандалада»: почему ненцы восстали против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https://news.rambler.ru/other/38743417/?utm_content=rnews&utm_medium=read_more&utm_source=copypinkhttps://news.rambler.ru/other/38743417-mandalada-pochemu-nentsy-vosstali-protiv-sovetskoy-vlasti/

다시 휩쓸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던 1943년 봄 야말 지역의 협동조합 본부는 네네츠인들에게 제공되던 빵의 공급을 중단했다. 정상적으로 물고기, 야생동물(식용, дичь), 순록 등에 부과된 세금을 지불하고 있었던 네네츠인들은 소비에트의 이러한 결정에 심하게 분개했다. 항의의 물결은 매우 거세게 나타났다. 네네츠인들의 순록집단농장(оленоводческий колхоз)으로부터의 대규모 탈주가 이루어졌다. 그들은 집단으로 순록을 약탈하여, 툰드라 지역에서 방목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보로쉴로프 꼴호즈(колхоз имени Ворошилова)로부터 탈주한 네브뜨꼬(Небтко)라는 별명을 가진 세로떼뜨따(Е. Сэротетта 또는 Сардетта), 넬레(С. Неле)와 또쁘까(Х. Топка) 세 명의 네네츠인들이 주도했다. 우랄 산맥의 북부지역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야로(Яро) 공장으로부터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슈치에레첸스끼 툰드라소베트 관할 지역에 소비에트 정권에 불만을 품은 네네츠인들의 진영이 형성되었다. 언덕 위에는 경비용 천막이 세워졌고, 그들 모두는 미국제 소총으로 무장했다. 전체 회의를 통해 라쁘띠게(Лаптиге)라 불리는 세르게이 노고(Сергей Ного)와 냐드마(Нядма)라 불리는 바실리 라쁘판데르(Василий Лаптандер)가 지도자로 선출하고, 그들은 툰드라 지역의 불만세력을 지속적으로 규합해 나갔다. 네네츠의 무장 단체는 툰드라 지역을 지나는 밀가루 수송용 순록 대열을 약탈하고, 세금 지불을 위해 바쳐진 꼴호즈의 순록무리를 벌판으로 내 몰았다.

이에 당황한 소비에트 정부는 1943년 6월 21일 보르쿠타와 아르한겔스크 지역으로부터 봉기 진압을 위한 소련 내무부 인민위원회(НКГБ, 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СССР) 소속 부대는 네네츠인들의 봉기(만달라다)를 진압하기 위해 순록 썰매를 타고 빠이-호이스까야 툰드라(Пай-Хойская тундра) 지역으로 출동했다. 곧 이어 보르꾸뜨(Воркут)로부터 인민위원회 소속 두 번째 부대가 도착했다. 6월 23일 아르한겔스크로부터 파견된 부대는 네디-유(Недь-Ю)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네네츠인들의 진영을 포위했다. 체끼스뜨(ЧК, 체카 요원)들이 산으로 올라오기 시작하자 네네츠인들은 사격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켐줄린이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 즉시 자동소총을 이용한 격렬한 대응이 시작되었다. 수 시간 동안 양측의 중단 없는 사격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네네츠인은 체키스트 1명을 사살하고 4명에게는 부상을 입혔다. 8시간이 경과된 후 켐줄린은 숙영지에서 여성들을 소환해 상대진영으로 보내어 사격을 멈추고 투항할 것과 동시에 이에 불응할 경우 진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알리게 했다. 이의 사항에 대해 네네츠인들은 1시간 반 동안 심의를 통해 무기를 버리기로 결정하고, 즉시 절벽 아래로 소총과 베르당총(берданка, 19세기 후반 러시아 보병이 사용하던 단발총)을 던졌다. 36명의 네네츠인들이 산에서 내려와 체포됐다. 추후에 3명이 더 체포되었다⁸⁾.

‘만달라다’ 지도자 중 한 명인 세르게이 노고(Сергей Ного)는 재판 받기 전 감옥에서 사망했다. 또 다른 지도자인 바실리 라쁘판데르(Василий Лаптандер)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이후 20년 노동교화형으로 감형되기도 했지만 그 다음 해인 1944년 2월에 생을 마감했다. 21명에게는 재산 몰수와 함께 10년간의 수용소 구속형이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5년에서 8년 사이의 수용소 형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재판에 의해 수용소로 보내진 거의 모든

8) Восстания на Ямале 1934 , 1943 гг.('Ямальская Мандалада'). <http://www.hrono.ru/sobyty/1934sssr.html>

‘만달라다’ 참여자들은 이후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1943년 10월 탐베이스카야 툰드라(Тамбейская тундра) 지역에서 네네츠인에 의한 또 다른 봉기가 발생했다. 저항은 새로운 직위와 직책에 열의를 갖고 있던 야말 지구의 소련 내무부 인민위원회 지부장인 메드베데프(Медведев)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는 순록 집단농장 ‘붉은 시월(Красный Октябрь)’의 대표로 예진기(М. Езынги)를 선출하여 소비에트 정권에 불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찾아내는 전권을 위임하며, 새로운 ‘만달라다’에 대한 진압을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1월 16일 소련 내무부 인민위원회 지부는 벤가(Вэнга)의 네네츠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 그러나 네네츠인들의 저항은 매우 거세게 표출되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메드베데프는 탐베이 마을로부터 살레하르드로 전보를 보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10분간의 총격전이 전개됐다. 항공을 통한 기관총 수송을 요청한다. ‘만달라다’의 규모는 200명에 달한다.” 옴스크로부터 살레하르드를 거쳐 가라닌(Гаранин)이 지휘하는 특수작전 부대가 도착하여 두 무리의 순록 집단을 점령하였으며, 이로 인해 네네츠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체카(반혁명/사보타지 단속 비상위원회: ЧК, Чрезвычай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борьбе с контрреволюцией и саботажем)는 차또꾸-야쁘찌까(Сатоку-Яптика) 진영에 가담했던 ‘만달라다’의 참가자들을 처형했다. 그 수는 약 150명 이상이었으며, 그 중 50명이 구속됐다. 7명의 네네츠인은 도주를 시행하던 중, 사살되었다. 사격의 혼란 속에서 부상을 입은 체키스트 2명을 제외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나머지 네네츠인들은 탐베이로 호송되어 수용소에 구금되었다. 동시에 가라닌은 ‘북부항로 수로국(гидрографическая партия Главсевморпути)’의 책임자 뽀류스닌(Плюснин)을 체포하고, 그가 독일정보국의 첩보원⁹⁾이었다고 폭로했다. 이렇게 제2차 ‘만달라다’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⁹⁾.

그러나 이후 네네츠인들은 비밀리에 만달라다 사건에 대해 논의하며, 경찰에 의해 구속된 후 사라진 친척들과 지인들을 회상을 이어 나갔다. 그 과정 속에서 구속되었던 사람들 중 소수만이 감옥과 수용소로부터 돌아왔으며, 대부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했다. 만달라다 참가자들의 가족들은 종종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거나 매우 힘든 삶을 영위해나가야만 하기도 했다. 소련 당국은 따뜻한 모피와 옷 그리고 순록 등의 재산을 몰수하고, 남자들을 감금하기도 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무방비 상태의 여인들은 죽음의 혹독한 환경의 툰드라 지역에 방치되기도 했다. 친지들에 의해 일부의 고아들은 마을 근처로 옮겨와 생존을 유지할 수 있기도 하였지만, 그들 대부분은 굶주림이나 한파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네네츠 출신 신부인 세꼬 람도(Секо Ламдо)가 종종 거론되고 한다. 세꼬 람도는 1943년 ‘만달라다’에 참여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마을 대표는 그녀의 어머니를 ‘인민의 적’으로 간주하여 마을로부터 추방했다. 그녀는 말라야 오비(Малая Обь) 강 유역의 네네츠인들과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당국은 그녀에게 단지 썰매를 끄는 개들이 먹는 사료만을 허락했다. 그녀는 야생 동물들에 의해 심하게 물려 뜯기기도 했다. 세꼬의 어린 딸과 그녀의 어머니는 수개월 간 기아에 허덕이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결국

9) <https://ru.wikipedia.org/wiki/%D0%9C%D0%B0%D0%BD%D0%B4%D0%B0%D0%BB%D0%B0%D0%B4%D0%B0>

1946년 말 그녀는 기아로부터 사망했으며, 어린 딸은 기숙학교로 보내졌다.

그리고 오랜 기간 ‘만달라다’에 관련된 정보는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와 소비에트 정권 붕괴 이후 ‘만달라다’에 관련된 자료와 이야기들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1991-2010년 사이 ‘네네츠인들의 알려지지 않은 비극’으로서 만달라에 관련된 적지 않은 학술 및 민속관련 연구물들이 출판되어 나오기 시작했다. 동시에 네네츠인들의 입을 통해 만달라다 사건은 ‘신화와 전설’로 변형된 상태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III. 나가는 말

네네츠인들은 러시아 북극권 툰드라 지대에서 전통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농업, 수렵과 어업, 순록을 위주로 하는 목축을 주요 경제행위로 하며 삶을 영위해 온 대표적인 소수민족 중 하나이다. 이들은 소비에트 시기와 체제 전환 이후 불어 닦힌 거대한 정치, 경제 및 사회 변화를 체험해야만 했으며, 최근 들어서 그들의 거주 공간은 러시아의 대표적 가스 및 석유생산지 중 하나로 변모되어 변화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네네츠인 거주지역의 근대화 과정은 1920년대부터 소비에트 정부에 의해 북극 지역과 이곳의 소수 민족을 국가체제로 포섭하기 위한 구상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30년대에 본격화되어 일차적으로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에 국가적 건설 과정에서 완수되었다. 이 시기에 완수된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북극 소수민족의 문맹 퇴치와 문화적 후진성의 극복, 둘째, 국가요원의 양성, 셋째, 유목민의 정착 유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소비에트 정권 차원에서 이 시기에 전개되었던 근대화과정은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토착 유목민으로서 네네츠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근대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쇠퇴하고 자립성 및 정체성이 약화되는 상황을 직접 체험해야만 했기 때문이다.¹⁰⁾

1877년 러시아 북극권 인간 거주권의 거의 최북단인 아르한겔스크 주에 속하는 노바야 제물라 섬까지 자국 영토 주장을 목적으로 순록유목 생활을 하던 네네츠인들을 전략적으로 정착시키기 시작했다. 이후 소비에트 시절 네네츠인들이 순록목축을 영위해 나가던 이 지역은 냉전시대의 제물이 되기도 했다. 소비에트연방은 총 224개의 핵폭탄을 이 섬에 투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1955년에는 나르얀 마르지역으로의 네네츠인들의 강제이주가 실행되기도 했다. 1981년에는 가스정 폭발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폭발로 인한 화재는 1년 넘게 지속되었으며 정부는 화재진압을 위한 핵폭발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불길을 잡을 수 없었다. 이 화재는 또 다른 대형 가스정을 굴착하는 것으로 진압에 성공하였으나, 그 굴착 과정은 약 4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결국 화재는 총 5년 동안 이어졌던 것이다. 이로 인해 순록목초지는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이 지역은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외부인들의 출입과 원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금지되기도 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네네츠인들은 지속해서 자신들의 권익과 생활 방식을 위한 저항을 유지해 온 것이다.

10) 최우익, “네네츠 자치구 주민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특성: 시장 개혁기 석유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러시아연구』 제21권 제1호, 서울대학교 러시아 연구소 2011. p. 271.

그 저항운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본론에 소개한 ‘만달라다’이다. 두 차례에 걸쳐 전개된 네네츠인들의 ‘만달라다’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어 확산되어 나갔으며, 소비에트 국가 차원의 진압 작전으로 인해 소멸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 무력 진압된 ‘만달라다’는 표면적으로 실패로 끝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네네츠인들의 운동은 소비에트 역사의 큰 사건들에 비해 다소 비중이 약한 사안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달라다’에 의해 만들어지고 굳어진 네네츠인들의 저항의식은 구전을 통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는 네네츠인들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만달라다’는 네네츠인들의 삶의 형태인 유목생활로 인해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서북극권 거의 전역에서 광대하게 전개되었다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현재 네네츠인들의 상당부분이 네네츠 자치구와 야말로-자치구라는 행정주체 안에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어느 정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는 현재의 북극권 개발에 대한 러시아와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북극권 관련 뉴스 (2018.07.10 – 2018.10.20 최신 뉴스순 정리)

2018-10-11 http://echo.msk.ru/news/2293976-echo.html
☞ 핀란드에서 열리는 북극정상회담에서 러시아 및 미국 대통령간의 만남이 있을 수 있다
2018-10-04 http://fishretail.ru/news/rossiya-podpisala-megdunarodnoe-soglashenie-o-predotvrashchenii-390025
☞ 러시아는 북극에서의 통제할 수 없는 산업출현 방지에 대한 국제조약에 서명하다
2018-09-25 http://www.kommersant.ru/doc/3752115
☞ 러시아는 북극에서의 군사훈련기간에 연안 로켓장비 <간성>을 선보이다
2018-09-24 http://echo.msk.ru/news/2283446-echo.html
☞ <러시아원자력>은 로봇트를 이용해 북극 해저에서 희금속 채취를 계획하다
2018-09-11 http://www.interfax.ru/russia/583981
☞ <로스네프치>와 <즈베즈다>는 북극용 유조선 10척 건조계획에 합의하다
2018-08-31 http://lenta.ru/news/2018/08/30/bomb/
☞ 북극에서 <기후 폭탄>을 발견하다
2018-08-31 http://www.itar-tass.com/armiya-i-opk/5509944
☞ 쇼이구 - <몇몇 국가의 이익에 중심되는 북극은 아마도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2018-08-28 http://fishretail.ru/news/mkk-rossiya-i-ssha-prodolgat-sovmestnie-388901
☞ 러시아와 미국은 북극 및 베링해에서 IUU-어업활동 예방을 위한 공동활동을 지속하다
2018-08-28 http://echo.msk.ru/news/2266848-echo.html
☞ 러시아는 북극에서 대공방어 군사기지 건설을 시작하다

2018-08-15 http://www.kommersant.ru/doc/3714243
☞ 영국 의회는 북극에서의 러시아 군사활동 강화에 대해 염려하다
2018-08-14 http://lenta.ru/news/2018/08/14/arktika/
☞ 러시아 군사당국은 7천만 루블을 들여 필요성이 없는 우주에서 촬영한 북극영상을 주문하다
2018-08-09 http://www.itar-tass.com/armiya-i-opk/5442805
☞ 러시아 훈련함 <페레코프>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북극으로의 훈련일정을 시작하다
2018-08-01 http://www.itar-tass.com/nauka/5419758
☞ 학자들은 백곰들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극생태계에 대한 평가방법을 연구하다
2018-07-26 http://www.uralinform.ru/news/society/294635-nephtyaniki-pomogli-ochistit-arkticheskoe-pobereje-ot-naslediya-proshlogo/
☞ 석유채굴자들은 과거의 채굴로 오염된 북극연안 청소에 도움을 주다
2018-07-25 http://echo.msk.ru/news/2246842-echo.html
☞ 러시아 동시베리아 북극지역에서 이상 자연현상이 발생하다
2018-07-24 http://ca-news.org/news:1461276
☞ 키르기스스탄 및 카자흐스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북극지역을 청소하다

I. 북극학회 정관

제1장 총칙

2017년 12. 1. 제정

제1조(명칭) 본 연구기관은 ‘북극학회(가칭,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한반도와 한민족의 미래 성장 공간인 북극지역에 관련된 융복합 학술 연구 및 각종 정책과 전략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회의 주 사무소는 학회장 소재지 내에 둔다.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학회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북극 관련 지정, 지정, 지문화 및 생태환경에 관련된 융복합 학술 연구 사항
2. 북극 관련 교육, 컨설팅 및 출판 업무
3. 북극 관련 국책 사업 및 정책, 전략 기획 참여 사업 사항
4. 북극 관련 자료, 기관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법에 의하여 인정된 국내외의 대학(원)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북극 관련 국내외의 공인연구소의 연구원 또는 연구원이었던 자
3. 기타 위 각호의 1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③ 준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법에 의하여 인정된 국내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에서 관련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자
2. 북극 관련 국내외의 공인연구소의 연구원 또는 연구원이었던 자
3. 기타 위 각호의 1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④ 기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연구기관, 경제단체 및 기업체 등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⑤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

①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가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장 및 총무의 선출권을 지닌다.

③ 정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지닌다.

④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 등 일체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고 학회지 등 학회 발간물과 학회보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⑤ 모든 회원은 매 회계년도별로 소정의 연회비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년도에는 본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지니지 못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사망
3. 제명

②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학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구성

제8조(조직)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이 연구기획 및 대외협력, 편집출판 팀을 두어 운영한다.

② 전항의 각 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구기획: 연구활동, 자료 DB 구축, 학술회의, 연구사업 기획, 실행
2. 대외협력: 대외기관과의 교류 기획, 실행.
3. 편집출판: 학술지 및 도서 출판 기획, 발간
4. 사무국

제9조(임원) 본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학회장 1 인
2. 수석부회장 2 인
3. 부회장: 20인 이내
4. 총무이사 1 인
5. 연구기획이사 1 인
6. 대외협력이사 1 인
7. 편집출판이사 1 인
8. 감사: 2 인
9. 행정간사 1 인

제10조(기구 및 위원회)

① 본회는 다음의 기구로 구성한다.

- 1. 총회
- 2. 회장단 회의
- 3. 이사회

② 회장단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등으로 구성되며 총회의 소집 및 부의사항, 이사회회의의 소집 및 부의사항 기타 본회의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전적 의견조정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사무국에는 총무이사과 행정간사를 두어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본회에는 학회사업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 1. 논문심사위원회
- 2. 학회지 편집위원회
- 3. 학술상 시상심사위원회
- 4. 기금관리위원회
-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설치하는 위원회

제11조(고문 및 명예회장)

- ①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 ②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③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2조(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선임)

- ① 회장은 임기만료 전에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투표에 의해 과반수 이상의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투표에 의해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 ③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②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③ 회장 및 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
- ④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⑤ 임원 임기만료 후라도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임원선출 시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②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동 퇴임한다.

제16조(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④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동시 유고시에는 부회장의 연장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의 궐위 시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지체없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이사의 직무)

- ①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이사는 다음의 직무를 맡아 회장을 보좌한다.
 - 1. 학회보 및 학회지 발간
 - 2. 연구발표회 및 홍보업무
 - 3. 국제관계
 - 4. 자료수집
 - 5. 총무 및 경리업무의 감독
-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년 1회 이상 본회의 재정과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 총회에 보고한다.
- ② 감사는 제1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회장에게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제19조(자문위원회)

- ① 본회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 자문 위원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사로 구성되며 학회의 제반 사업에 대해 자문한다.

제20조(연구원 및 보조원) 본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 및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이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4.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 5. 이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6. 전차회의록의 접수에 관한 사항
-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총회에 부의된 사항

제23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년1회 2월중에,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 ②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모든 회의안건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건명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도 통지할 수 있다.
-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부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와 의결제적사유)

-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타회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위임자는 매 총회마다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 한다.
 - 1. 임원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 구성)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6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부의안
-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사업보고와 결산에 관한 총회부의안
- 3. 본회의 해산, 기타 총회에 부의할 안건
- 4. 회원자격의 인정 및 회원가입승인
- 5.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
- 6. 고문위촉을 위한 동의
- 7. 지부사무국 또는 부문별 연구위원회의 설치
- 8. 재산의 관리운영
-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7조(이사회 의사 및 의결 정족수와 의결 제적사유)

-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

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제24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이사회에도 준용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

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부의하여 결의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부의안건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제안이유와 내용, 의결주문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 서면부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결의로 이사회 의결에 대신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소집이 불가능할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 소집의 특례를 가진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충당한다.

1. 학회 회비
2. 연구활동, 프로젝트 기획 및 참여 활동을 통한 수입
3. 보조금 및 지원금
4. 기타수입

제31조(기금운용 및 적립금) 회장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기금 또는 적립금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32조(예산, 결산, 사업계획) 본회의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33조 (회비의 용도) 회비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및 자료 보급을 위한 경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행사를 위한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7장 보칙

제35조 (정관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참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 (정관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정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II. 북극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17년 12. 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극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를 통하여 출간되는 학술잡지와 학술활동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위원회는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편집위원장, 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한 간사는 학회장이 지정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제6조(연구부정행위 조사)

-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 부정행위 존재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2. 학회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조사위원회는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 3.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교외 인사를 20%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조사위원회는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기피, 회피)

-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시 기피신청된 위원은 배제된다.
- 2.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 3.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1.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확인한다.
- 2. 전항의 확인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연구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총장 및 관계 교직원은 심의, 의결, 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5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편집위원

<p>한종만(韓種萬, Han, Jong-Man) 북극학회 회장 독일 뮌헨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배재대학교 러시아·중앙아시아학과 교수 e-mail: jmhan@pcu.ac.kr</p>	<p>김정훈(金正勳, Kim, Joung-Hun)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역사학 박사 현) 배재대학교 러시아·중앙아시아학과 교수 e-mail: jhkrm@pcu.ac.kr</p>
<p>계용택(桂鏞澤, Ke, Yong-Tek)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역사학 박사 현) 러시아리서치 센터 대표 e-mail: dovri@hanmail.net</p>	<p>박종관(朴鍾寬, Park Jong-Kwan)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경북대학교 연구교수 e-mail: parkjk7377@naver.com</p>
<p>배규성(裴奎星, Bae Kyu Sung)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현)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HK 연구교수 e-mail: baeks777@naver.com</p>	<p>서승현(徐承顯, Seo, Seunghyun) 미국 Indiana University 슬라브언어학 박사 현)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e-mail: seoseung5@hanmail.net</p>
<p>양정훈(梁庭熏, Yang, Junghun) 러시아외교아카데미 국제정치학 박사 현) 수원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e-mail: jhyang@suwon.ac.kr</p>	<p>예병환(芮秉煥, YAE Byung-Hwan) 독일 Bamberg 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대구대학교 강사 e-mail: yaebh@pcu.ac.kr</p>
<p>이재혁(李在赫, Yi, Jae-Hyuk) 독일 키일대학교/경희대학교 지리학 박사 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e-mail: yijenie@hanmail.net</p>	<p>백영준(白榮準, Baek, YoungJun) 편집 행정간사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아스타피예프 국립 사범대학교 지리-경제학과 박사과정 e-mail: kiselings@daum.net</p>

<p>김대엽 조교 현) 배재대학교 러시아학 전공 연락처: 042)520-5713 e-mail: ty18535853@naver.com</p>

자문위원

이병화	주 노르웨이/주 아이슬란드 대한민국 대사
공우석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홍성조	극지연구소 자문위원